

공개용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3차 종료재심사 최종보고서

(조사번호 : 구제 23-2023-1호)

2023. 12. 21.

무역조사실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덩핑방지관세부과 종료제정사(3차) 최종 보고서

2023.12

무역조사실

안내 사항

< 비밀취급 자료 관련 >

-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이 비밀취급을 요청한 자료, 관세청 수입통계자료, 정보유통기업의 유료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국내 동종물품 내수판매량 등은 아래와 같이 기준년도 값을 설정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증감률을 반영한 환산값을 제시하되, 기준연도 값과 환산값은 본문과 표에 "12,345"(기울임, 밑줄)의 형태로 표시함
  - 기준년도 값 : 금액과 물량 모두 1,000
- 연도별이 아닌 분기 또는 반기별 내수판매량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전년동기 값은 기준연도와 동일한 값으로 재설정하여 차년 증감률을 반영한 환산값을 제시하되, 위와 마찬가지로 본문과 표에 "12,345"(기울임, 밑줄)의 형태로 표시함
  - 예 : 마지막 연도가 '21년 상반기까지인 경우, 전년동기('20년 상반기) 값을 기준연도와 동일하게 금액과 물량 1,000으로 설정
- '가격 차이' 자료는 공개될 경우, 상대방의 가격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되, 증감률을 표시함
- 시장점유율, 국내 동종물품 가동률, 물량 비중, 원가구성비 등 비율(%)로 표시되는 자료는 공개하지 않되, 증감률(%의 경우에는 %p로 표시)을 표시함
  - 예 : 10.0% → 15.0%로 증가한 경우 5.0%p로 표시
- 기준연도 값이 음의 부호(△)인 경우에는 '적자'로 표시하고 다음 연도에는 '적자 확대', '흑자 전환' 등으로 표시함

< 목 차 >

I. 재심사 요청 개요 .....	1
1. 요청인 및 피요청인 .....	1
2. 재심사대상물품 .....	3
3. 국내생산품과 재심사대상물품간 동종물품 여부 .....	5
4. 덤핑방지관세 부과제외 요청 및 검토 .....	8
5.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및 국내산업의 범위 .....	9
6.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산업현황 및 수급현황 .....	12
7. 비밀취급 여부 검토 .....	15
II.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	17
1. 덤핑사실 .....	20
2. 수입물량의 변동 .....	32
3. 재심사대상물품 공급국의 생산능력 및 수출여력 .....	32
4. 제3국 수입규제조치 현황 .....	33
5.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검토 종합 .....	34
III.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	34
1. 국내산업에 미친 덤핑방지조치의 효과 .....	35
2.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국내산업피해의 전망 .....	49
3.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검토 종합 .....	61
IV.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	62
최종 덤핑률 .....	62
V. 무역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항 .....	63

< 참고자료 >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재심사 산업피해조사 경과 .....	65
-------------------------------------	----

< 불임자료 > : 별책

불임 1. 조사개시 공고문 .....	별책
불임 2. 부과제외 요청 의견서 .....	별책
2-1. 피요청인 .....	별책
2-2. 요청인 .....	별책
불임 3. 이해관계인회의 발언요지 .....	별책
3-1. 요청인 .....	별책
3-2. 피요청인 .....	별책
불임 4. 이해관계인회의 후 의견서 .....	별책
4-1. 요청인 .....	별책
4-2. 피요청인 .....	별책
불임 5. 공청회 개최 공고문 .....	별책
불임 6. 공청회 발언요지 .....	별책
6-1. 요청인 .....	별책
6-2. 요청인측 대리인 .....	별책
6-3. 피요청인 대리인 .....	별책
6-4. 주한일본대사관 .....	별책
불임 7. 공청회 후 의견서 .....	별책
7-1. 요청인 .....	별책
7-2. 피요청인 .....	별책

# I. 재심사 요청 개요

## 1. 요청인 및 피요청인

### 가. 요청취지

- '23.1.11. 주식회사 디케이씨(이하 디케이씨)는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 시 동 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 할 수 있으므로 덤핑 방지관세부과 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함

### 나. 요청인

- 요청인 : 디케이씨
  - 대리인 : 법무법인 울림(변호사 김태우), 더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컨설팅(회계사 김종탁)

(‘22년 기준)

요청인		디케이씨
회사설립연월일		1990년 2월 28일
대표자		곽동린
주 소	본 사	(본 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고현길 98번길 66 (서울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타워 36층
	공 장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고현길 98번길 66
자본금		5,599백만원
주요주주 및 지분율		서수민 78.20%, 정연희 12.95%, (주)포스코 4.91%
매출액	총매출액	1,000,392백만원
	동종물품	xxx백만원
주요생산제품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종업원수		xxx명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다. 피요청인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 부과율(%)			요청인 제시 덤핑률 (%)
		원심	1차재심	2차재심	
일본	NIPPON STEEL Stainless Steel Corporation (이하 "NSSC" )	13.17	13.17	13.17	15.01
	JFE Steel Corporation (이하 "JFE")				
	Nippon Yakin Kogyo Co., Ltd (이하 "Yakin")				
	그 밖의 공급자				

\* 자료 : 재심사요청서

○ 공급자 대리인

- NSSC, JFE, Yakin : 김·장 법률사무소(변호사 김성중, 회계사 기정석)

라. 그간의 조치경과

○ '11.4.21. :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원심)

- 덤핑방지관세부과기간 : '11.4.21. ~ '16.4.20. (5년)

- 덤핑방지관세율 : 13.17%

○ '16.12.6. :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1차재심)

- 덤핑방지관세부과기간 : '16.12.6. ~ '19.12.5. (3년)

- 덤핑방지관세율 : 13.17%

○ '20.7.14. :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2차재심)

- 덤핑방지관세부과기간 : '20.7.14. ~ '23.7.13. (3년)

- 덤핑방지관세율 : 13.17%

##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1 7. 1.부터 '22. 6. 30.까지
-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 '19. 1. 1.부터 '22. 12. 31.까지

## 2. 재심사대상물품

### 가. 품 명 :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

- 관세품목분류(HSK) : 7219.21.1010, 7219.21.1090, 7219.21.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 관세율 : 기본관세율 8%, WTO 양허세율 0%

### 나. 재심사범위

- 스테인리스강<sup>1)</sup> 중에서 두께가 8mm이상 80mm이하이고, 너비가 1,000mm이상 3,270mm이하인 열간압연 강판으로서 압연, 열처리, 냉각 및 후처리과정을 거친 완제품<sup>2)</sup>. 단, 코일형태의 제품 및 원심에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제품은 제외

### 다. 물리적 특성 및 용도

- 물리적 특성 : 재심사대상물품의 인장강도<sup>3)</sup>, 항복점<sup>4)</sup>, 연신율<sup>5)</sup> 등의 특성이 중요하게 고려되며 화학적 성분은 강종<sup>6)</sup>에 따라 구분됨
- 용도 : 석유화학, 조선, 강관, 담수, 발전 및 반도체 등의 산업용 원자재로 사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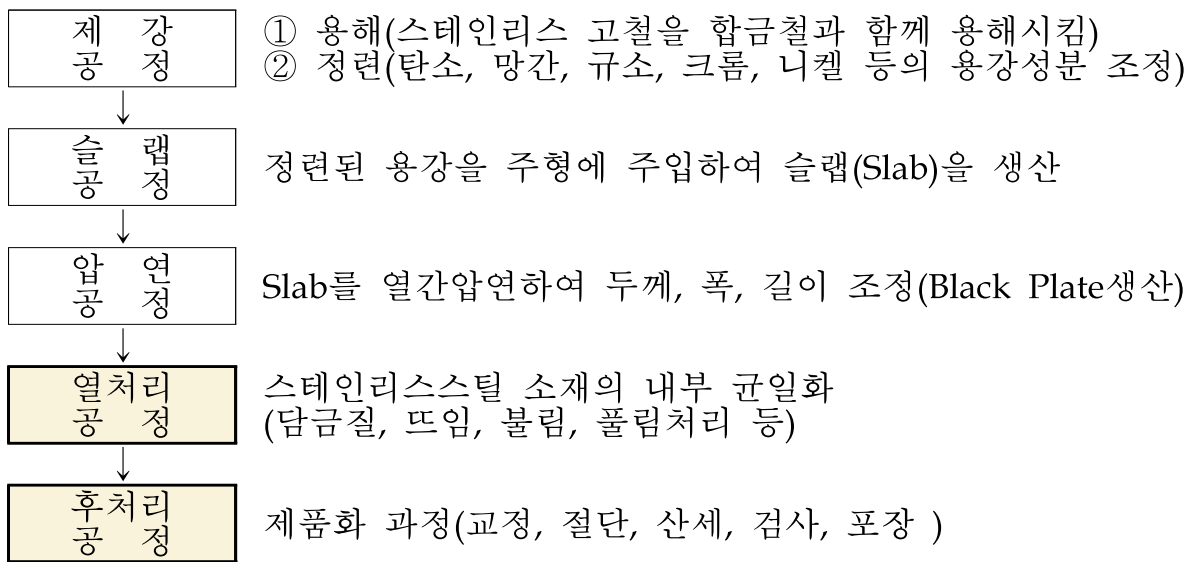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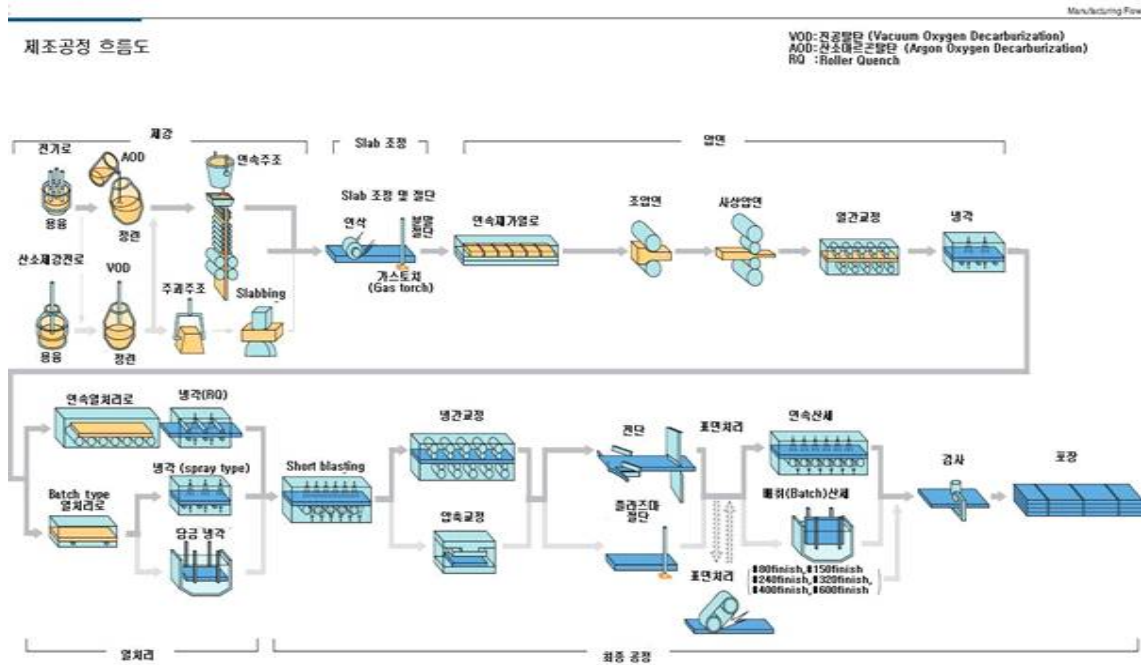
---

1)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5 이상인 합금강  
 2) 스테인리스 Slab(강편, 납작하고 긴 직사각형 모양의 강판)를 열간상태에서 압연한 후 생산된 스테인리스 Black Plate제품(열처리공정, 산세공정을 거치지 않은 제품)은 반제품 상태이므로 재심사대상물품의 범위에서 제외  
 3) 규정규격으로 가공후, 축방향으로 잡아당겨 끊어질때까지 하중  
 4) 소성변형이 시작되는 순간의 응력  
 5) 재료가 늘어나는 비율  
 6) Cr-NI (크롬-니켈)을 주성분으로 하는 오스테나이트(Austenite)계(대표강종: 304)와 Cr(크롬)을 주성분을 하는 마르텐사이트 (Martensite)계 및 페라이트(Ferrite)계(대표 강종: 410 및 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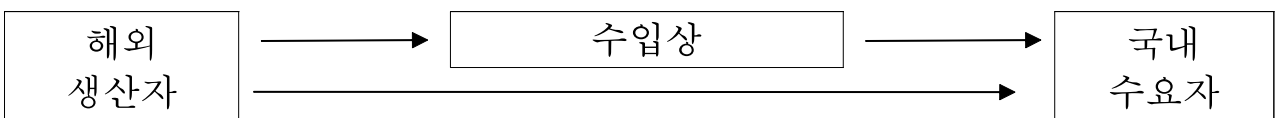
라. 제조과정

- 원재료를 투입한 후 제강(용해, 정련, 주조, 가열로) · 압연 · 후처리 (열처리 이후) 과정을 거침



마. 유통경로

- 국내 수입상이 재심사대상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수출자가 직접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함



### 3. 국내생산품과 재심사대상물품간 동종물품 여부

< 검토할 사항 >

○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또는 기능, 특성 및 구성요소의 유사성을 비교하여 조사대상물품과 경쟁 또는 대체관계에 있는 동종물품의 범위를 정함

관련 법규

○ 관세법시행규칙 제11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① 영 제59조제4항에서 "동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겉모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가. 품명 및 정의 : 재심사대상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함

나. 물리적 특성

- 국내생산자는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 동종물품간의 물리적 특성, 품질 및 기능에 대한 시험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시험한 결과를 제출하고 재심사요청물품과 국내동종물품은 거의 유사한 물리적 특성을 가진다고 주장함
-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에 대하여 국내생산자는 국내생산품과 재심사대상물품간 물리적 특성에 차이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국내 수입·수요자, 재심사대상물품 공급자도 답변서 및 의견서 등에서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물리적 특성이 상이하다는 의견은 제출하지 않았음
- 동 조사의 원심 및 1차, 2차 재심에서도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동종물 품은 물리적 특성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음

다. 제조과정 : 재심사대상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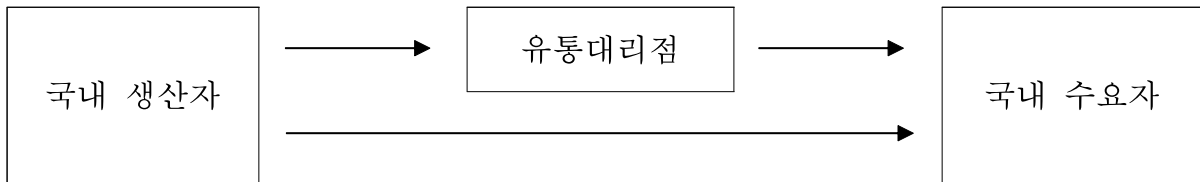
라. 품질 및 소비자 평가

- 국내수입 및 수요자는 답변서에서 (주)범한메카텍, 대선조선(주)은 재심사 대상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은 물리·화학적 특성 등에서 차이가 없거나 유사하다고 답변하였으며 가격 시황에 따라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 생산품과 혼용하여 사용한다고 답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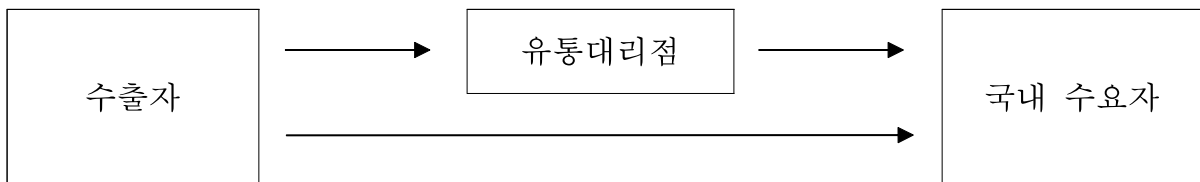
마. 유통경로 : 재심사대상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함

- 국내 생산자가 직접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판매상을 통해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있고, 재심사대상물품은 국내 수입자가 재심사 대상물품을 수입 후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수출자가 직접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있어 상호간 유통경로는 동일 또는 유사함

< 국내생산품 유통경로 >



< 재심사대상물품 유통경로 >



바. 동종물품 해당여부

- 국내생산품은 재심사대상물품과 제품의 물리적 특성 및 용도, 제조공정, 유통경로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며 원심과 1차, 2차 재심에서도 국내 생산품과 재심사대상물품은 동종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국내 수요자는 국내생산품과 조사대상물품을 혼용 또는 대체사용 되고 있어, 국내시장에서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물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4. 덤핑방지관세 부과제외 요청 및 검토

부과제외 시 고려사항

-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2조(부과제외대상물품의 결정기준)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부과제외요청물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
  2. 국내산업이 부과제외요청물품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부과제외요청물품의 국내 수급상황
  4. 기타 합리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항

- (피요청인) 최근 NSSC가 신규 개발한 제품으로 요청인의 제조생산이 불가능하고, 한국 수요기업의 안정적인 공급 요청이 있는 강종 6개 품목과 요청인의 제조 실적이 없는 1개 품목에 대해 부과제외 요청

요청인	부과제외요청강종	부과제외사유
NSSC	ASTM N08800/ASME N08800	NSSC가 신규 개발한 강종으로, 국내수요기업 요청이 있고, 국내생산이 불가함
	ASTM N08810/ASME N08810	
	ASTM N08811/ASME N08811	
	JIS SUS303	국내생산자 생산실적 없음

- (요청인) ASTM/ASME N08800, ASTM/ASME N08810, ASTM/ASME N08811에 대한 제외요청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JIS SUS303은 요청인이 생산 가능한 품목이고 과거 생산한 실적이 존재함으로 제외 반대함
- (무역조사실(이하 “조사실”)) 요청인과 피요청의 의견서를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함
  - ① 피요청인으로부터 이미 부과중인 강종과 유사 또는 동일한 화학성분 및 기계적 특성에 대한 증빙 자료가 제출되었고, 수입실적이 없으며, 요청인이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강종이므로 부과제외하기로 함
    - ASTM N08800,ASME N08800, ASTM N08810, ASME N08810
    - ASTM/ASME N08811
  - ② 아래 강종은 2차 종료재심사에서도 동일하게 피요청인으로부터 부과제외 요청이 있었으나 검토 후 제외하지 않기로 결정된 품목이며, 요청인의 국내 생산 가능성이 있어서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기로 함
    - JIS SUS 303

5. 국내 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및 국내산업의 범위

가. 국내생산자, 수입자 및 수요자

(1) 국내생산자

- 국내생산자는 디케이씨와 에스엠스틸 (이하 SM스틸) 2개사임

(2022년 기준)

국내생산자	생산량(톤)	비중(%)	찬성여부	비 고
디케이씨	xxx	65%이상	찬성	
SM 스틸	xxx	xxx	찬성	
합계	xxx	100%	-	

\* 자료 : 한국철강협회

(2) 수입자

- (주)영광스텐, (주)화신에스티, (주)세아제강, (주)대선조선 등으로, (주)대선조선이 답변서를 제출함

(3) 수요자

- 범한메카텍(주), (주)성광벤드, (주)태광, (주)지에스엔텍 등으로, 범한메카텍(주)가 답변서를 제출함

## 나. 국내산업의 범위

### < 검토할 사항 >

-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확인
- 국내생산자가 국내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확인
  - 국내생산자가 수입자이거나, 외국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국내산업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관련 법규

- 관세법시행령 제59조제4항 및 제5항
  - ④ 법 제5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
  - ⑤ 제1항에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관세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3항
  - ② 영 제59조제2항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영 제59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6개월 이전에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2.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한 생산자
  - ③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의 생산자가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 및 조건 등으로 이를 판매하는 때에는 당해 생산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국내생산자

- 해당 산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철강세라믹과)에 확인한 결과, 국내 동종물품의 생산자는 요청인인 디케이씨와 SM스틸이 있음

## (2) 국내산업의 범위 검토

- 본 조사의 요청인인 디케이씨는 관세청 통관자료, 조사신청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외국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상의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종료재심사 요청 전 6개월 이내에 재심사대상 물품의 수입실적도 없으므로, 관세법시행령 제5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범위에 포함됨
- SM스틸은 동종물품의 국내 생산량중 30%미만을 차지하나 금번 조사에 질의답변서를 미제출하는 등 대응 하지 않아 국내 생산 산업에 포함시키지 못함



## 6.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산업 현황

### 가. 개관

-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은 내식성(부식이 일어나기 어려운 성질), 내산성(높은 산도를 견디는 성질), 내열성(고온에서의 안정성), 고강도(파괴되기까지의 변형 저항) 등을 요구하는 고급 철강재로서,
  - 석유화학, 건설 및 산업구조물, 발전설비, LNG 저장 및 운반 설비, 특수 화학선박 건조, 담수화 설비 등 광범위한 플랜트 산업분야의 주요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음
- 화학적 성분은 강종에 따라 구분되는데, Cr-Ni(크롬-니켈)을 주성분으로 하는 오스테나이트(Austenite)계(대표계열 : 304, 316) 및 Cr(크롬)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르텐사이트(Martensite)계와 페라이트(Ferrite)계(대표계열 : 410, 430)로 나뉘어짐
  - \* 국내산업의 주요 생산품은 오스테나이트계(304, 316, 321, 347 등)로, 마르텐사이트계 및 페라이트계의 대부분은 원심 당시에 부과에서 제외됨

### 나. 세계 시장동향

- 전 세계 STS 후판의 수출은 2022년 약 xx만 톤 규모임
- 19년 코로나 이후 많은 국가에서 자재공급 및 운송 제약으로 공급망이 교란되었고, 이와 관련된 제조업체의 수익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 특히 중국 및 인도등 주요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생산국의 무역규제로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여 많은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줄이거나 제조 공장이 폐쇄됨.
- 22년 아시아 태평양 시장 규모는 xx만 달러로 인프라 개발 시장이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되며 북미는 미국의 주도로 전자 및 엔지니어링 응용분야에서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됨
- 유럽의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산업은 자동차 산업과 연계하여 자동차 응용분야에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 전세계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국가별 수출 동향 >

(단위 : 톤, %)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연평균 증감률
		중량	비중	중량	비중	중량	비중	
1. 벨기에								
2. 스웨덴								
3. 중국								
4. 슬로베니아								
5. 인도								
6. 이탈리아								
7. 독일								
8. 일본								
9. 스페인								
10. 대만								
11. 남아공								
12. 한국								
전세계								

\* 자료 : 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http://intracen.org>)<sup>7)</sup>

다. 국내 시장동향

- 국내시장의 경우, 기존 원심, 1차, 2차 종료재심사에서는 디케이씨 1개사가 국내 주요생산자였으나 '19년 8월 SM스틸이 수입품 수요대체 및 해외수출을 목표로 군산 자유무역지역에 연간 xx만톤 규모의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제조 공장을 설립하고 20년 7월부터 생산을 개시, 22년 현재 연간 xx만톤을 생산하고 있음.
- SM스틸은 동종물품의 국내 생산량 중 30%미만을 차지하나 금번조사에 질의답변서를 미제출하는 등 대응 하지 않아 국내 생산 산업에 포함시키지 못함

라. 국내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수급현황

-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수요는 '22년 기준으로 xxx톤이며, 이 중 내수가 xxx톤으로 xx%, 수출이 xxx톤으로 xx%를 차지함

7) ITC는 1964년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연합(UN)이 함께 설립한 기구로, 본부는 스위스제네바(주네브)에 있으며 무역 진흥을 통한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 개발 솔루션을 제공. 제품 및 시장 개발, 무역지원서비스개발, 무역 정보, 인적자원 개발, 구매 및 공급관리, 무역 진흥을 위한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설계의 6개 분야에서 지원활동

-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공급은 '22년 기준으로 xxx톤이며, 이 중 판매가 xxx톤으로 xx%, 수입이 xxx톤으로 xx%를 차지함

< 국내수급 현황8) >

(단위: 톤, 백만원)

구분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수요	국내 소비 (내수)	물량	<u>1,000</u>	<u>1,083</u>	8.3%	<u>826</u>	△23.7%	<u>1,139</u>	37.9%	4.4%
		금액	<u>1,000</u>	<u>1,060</u>	6.0%	<u>913</u>	△13.9%	<u>1,804</u>	97.6%	21.7%
	해외 소비 (수출)	물량	<u>1,000</u>	<u>836</u>	△16.4%	<u>940</u>	12.4%	<u>797</u>	△15.2%	△7.3%
		금액	<u>1,000</u>	<u>852</u>	△14.8%	<u>1,088</u>	27.7%	<u>1,360</u>	24.9%	10.8%
합계		물량	<u>1,000</u>	<u>1,036</u>	3.6%	<u>848</u>	△18.2%	<u>1,074</u>	26.8%	2.4%
		금액	<u>1,000</u>	<u>1,020</u>	2.0%	<u>946</u>	△7.2%	<u>1,719</u>	81.6%	19.8%
공급	국내 공급 (판매)	물량	<u>1,000</u>	<u>976</u>	△2.4%	<u>945</u>	△3.3%	<u>1,029</u>	8.9%	1.0%
		금액	<u>1,000</u>	<u>984</u>	△1.6%	<u>1,056</u>	7.2%	<u>1,656</u>	56.8%	18.3%
	해외 공급 (수입)	물량	<u>1,000</u>	<u>1,271</u>	27.1%	<u>466</u>	△63.3%	<u>1,253</u>	168.9%	7.8%
		금액	<u>1,000</u>	<u>1,158</u>	15.8%	<u>525</u>	△54.7%	<u>1,963</u>	274.3%	25.2%

\*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및 국내 생산자 답변서

8) 국내소비는 동종물품의 국내판매와 해외공급(수입)의 합계, 국내공급은 동종물품의 국내판매와 수출의 합계를 말하며, 해외공급(수입)물량은 재심사대상물품과 기타국물품의 합계임

## 7. 비밀취급 여부 검토

### < 검토할 사항 >

- 비밀취급 요청자가 제출한 자료가 성격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인 경우,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비밀취급 요청인이 비밀로서 제출된 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상세한 요약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 관련 법규

-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제3항
  -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세법시행규칙 제15조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제조원가
  2.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3. 거래처의 성명·주소 및 거래량
  4.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관련 법규

- WTO 반덤핑협정 제6.5조  
 성격상 비밀인 정보(예를 들어 누설될 경우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되거나 정보 제공자 또는 그 정보의 취득원이 된 자에게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또는 조사의 당사자가 비밀로서 제공하는 정보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당국에 의해 비밀로 취급된다. 이러한 정보는 정보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 WTO 반덤핑협정 제6.5.1조  
 당국은 비밀정보를 제공한 이해당사자에 대해서 이러한 정보의 평문요약문을 제공토록 요청한다. 이러한 요약문은 비밀로서 제출된 정보의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하여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당사자는 이러한 정보가 요약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표명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요약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진술이 제공되어야 한다.
- WTO 반덤핑협정 제6.5.2조  
 당국이 비밀보호 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고 정보의 제공자가 그 정보의 공개나 일반화된 또는 요약된 형태로 발표하는 것을 인가할 용의가 없는 경우 이러한 정보가 정확하다는 사실이 적절한 출처로부터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입증되지 아니하면 이러한 정보를 무시할 수 있다.

가. 비밀취급 요청 서류

1) 이해관계인 제출서류

- (요청인) 재심사 요청서, 국내생산자 답변서, 현지실사 답변자료, 의견서,
- (피요청인) 피요청인 의견서, 공청회 발언요지 등
- (이해관계인) 수요자, 수입자 답변서

2) 정부 서류

- 본 중간 조사보고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나. 이해관계인 제출서류의 정당한 비밀취급 사유 제출 여부

- (요청인) 비밀취급 요청서류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였음
- (피요청인) 비밀취급 요청서류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였음

다. 비밀취급 자료 공개시 제출자 및 이해관계인 이익의 침해우려 여부

- (요청인) 국내생산자 답변서 및 별첨서류 등에 포함되어 있는 요청인의 제조원가를 추정할 수 있는 생산량, 가동률 등 기업 내부정보, 판매가격, 판매수량, 제조원가 등 공표되지 않은 회계자료,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별도 구매자료 등 영업상 비밀로 취급되어야 할 비공개정보 목록 및 비공개사유에 대해 제출하였음
  - 요청인은 위 자료가 공개될 경우 경쟁자는 요청인의 가격 정보 등을 활용한 공격적인 가격정책 등으로 요청인의 국내시장 영업·시장 경쟁력, 영업이익 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 (피요청인) 피요청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포함되어 있는 피요청인의 생산량, 생산능력, 가동률, 한국향 수출현황, 재심사대상물품의 평균 단가 등은 공표되지 않은 회계자료 또는 기타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이므로 비공개정보 목록 및 비공개사유에 대해 제출하였음
- (조사실 검토) 요청인 및 피요청인의 상기 비밀취급 요청자료가 공개될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해외생산자들이 해당 정보를 직접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등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 및 피해를 유발하는 등 이익침해 우려의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함

## II.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 < 검토할 사항 >

-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될 경우, 덤핑이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관련 법규

#### ○ 관세법 제56조 제1항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제54조에 따른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및 2호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속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2.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 관세법시행령 제64조 제5항

- 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

당국이 덤핑방지조치의 종료일자 이전에 자체적으로 개시한 검토 또는 동일자 이전 합리적인 기간내에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근거에 입각한 요청에 의하여 개시된 검토에서 덤핑방지조치의 종료가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을 초래할 것으로 당국이 판정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이해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내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달리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입수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긍정 또는 부정적인 예비 및 최종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

○ WTO 반덤핑협정 제6.8조에 따른 부속서 2

5. 이해당사자가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하였다면 비록 제공되는 정보가 모든 면에서 이상적이지 아니하더라도 이것은 당국이 이를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하여서는 아니된다.
6. 증거 또는 정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즉시 그 이유를 통보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기간내에 추가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 경우 조사시한이 적절히 고려된다. 당국이 이러한 설명을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이러한 증거 또는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공표된 판정에서 밝혀져야 한다.
7. 당국이 조사개시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를 포함하여 2차적인 출처로부터의 정보를 기초로 정상가격에 관한 조사결과를 포함한 판정을 내려야하는 경우, 당국은 특별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당국은 가능하다면 공표된 가격표, 공식 수입통계 및 세관보고서 등과 같이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조사과정에서 다른 이해당사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점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해당사자가 협조를 하지 않고 이로 인해 관련정보가 당국에 입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상황이 그 당사자가 협조하였을 때보다 그 당사자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하다.



## 1. 덤핑사실

### 가. 조사경과

- 조사실은 '23.3.15.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WTO 반덤핑협정<sup>9)</sup> 및 관세법<sup>10)</sup>에 따라, 재심사대상공급자(이하 “피요청인”)에게 40일 이상의 답변기간을 정하여 질의서를 발송함(답변기한: '23.4.26.)
  - 피요청인 뿐 아니라 공급국 정부에도 재심사 개시 및 재심사 사실 통보 협조를 요청함('23.3.15.)
  - 질의서 송부시, 답변서를 미제출할 경우, WTO 반덤핑협정 제6.8조<sup>11)</sup> 등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덤핑률을 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통보함
- 모든 피요청인은 '23.4.5.에 재심사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 NIPPON STEEL Stainless Steel Corporation(이하 “NSSC”)는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23.4.17.)하였고, 조사실은 연장요청 사유를 검토하여 답변 기한을 당초 '23.4.26.에서 '23.5.10.로 2주 연장하고 이를 통보하였음
  - 이후 NSSC는 연장된 답변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
  - NSSC가 제출한 질의서 답변서에는 인터넷에 공개된 회사 일반현황 자료만 제출되었으며, 덤핑의 지속 및 재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수적인 핵심자료인 생산원가, 내수판매, 수출가격 등이 제출되지 않았음

---

9) WTO 반덤핑협정 제6.1.1조 : 반덤핑 조사에 사용되는 질의서를 받는 수출자 또는 외국의 생산자에게 응답을 위해 최소한 30일이 주어진다. 동 30일 기간의 연장을 위한 어떤 요청에 대하여도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하며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이러한 연장은 가능한 한 허용되어야 한다

10)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국내생산자·공급자·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급자에게 덤핑사실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 때에는 회신을 위하여 질의서발송일부터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하며 공급자가 사유를 제시하여 동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11)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 이해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내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달리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입수가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예비 및 최종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

- JFE Steel Corporation(이하 “JFE”)는 답변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
  - JFE가 제출한 질의서 답변서에는 인터넷에 공개된 회사 일반현황 자료만 제출되었으며, 덤핑의 지속 및 재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수적인 핵심자료인 생산원가, 내수판매, 수출가격 등이 제출되지 않았음
- Nippon Yakin Kogyo Co., Ltd(이하 “Yakin”)은 재심사 참여 신청서는 제출했으나, 답변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 NSSC는 '23.9.21. 개최된 공청회에서 '덤핑조사 답변에 일부 미제출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입수가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발언함
  - 이에 따라, 조사실은 NSSC에게 미제출 자료와 관련하여 덤핑의 지속 및 재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수적인 핵심자료인 생산원가, 내수판매, 수출가격 등에 관한 핵심자료의 제출을 재요청(23.9.25.)하였음(답변기한: '23.10.10.)
  - 그러나 NSSC는 '23.10.10. '한국시장으로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덤핑률 산정은 성립할 수 없는 바, 정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생산원가, 내수판매, 수출가격 등의 핵심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음
- 모든 피요청인이 덤핑의 지속 및 재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수적인 생산원가, 내수판매, 수출가격 등에 관한 핵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sup>12)</sup>에서 규정한 현지실사를 계획하지 않음
-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6.2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 덤핑률(안)을 요청인 및 각 피요청인에게 통보하였음('23.11.22.)
  - 최종덤핑률(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제공(제출기한: '23.11.29.) 및 이해관계인 회의를 실시('23.12.4.)했으며, 요청인과 NSSC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JFE와 Yakin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음

12) WTO 반덤핑협정 제6.7조 : 당국은 관련 기업의 동의를 얻고 당해 회원국의 정부대표에 통보하여 이러한 회원국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공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서, 또는 상세사항을 추가로 입수하기 위하여 필요시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나. 덤핑사실 여부

- 모든 피요청인이 덤핑률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사실은 답변서에 기초한 덤핑률을 검토할 수 없었음
- 이에 따라,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부속서2,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13)에 따른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였음
- 수입물량의 변동, 공급국의 생산능력 및 수출여력, 제3국의 수입규제 조치 현황을 조사하고,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였음

### 1) NSSC(NIPPON STEEL Stainless Steel Corporation)

#### 가) 공급자 개요 및 판매 현황

- NSSC는 도쿄도 치요다구에 소재하고 있고, 일본제철 주식회사(日本製鐵 株式會社)가 NSSC 지분의 xxx%를 보유함
  - 재심사대상물품 생산공장은 야마구치현 히카리市(히카리 제조소)와 후쿠오카현 기타큐슈市(야와타 제조소) 두곳에 소재함
- NSSC는 재심사대상물품인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厚板)과 냉연, 열연, 코일 등을 생산, 판매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전문 생산회사임
- 재심사대상기간 중 관계사간 거래를 제외한 총매출액은 xxx백만엔, 관계사간 거래를 제외한 재심사대상물품 매출액은 xxx백만엔임

#### 나) 답변서 제출 현황

- '23.3.15. : 조사개시결정 통지 및 질의서 송부(답변기한 : '23.4.26.)
- '23.4.5. : 조사참여 신청서 접수

13)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23.4.17. : 피요청인측 요청에 따른 답변기한 연장(답변기한 : '23.5.10.)
- '23.5.10. : 답변서 접수<sup>14)</sup>
- '23.9.25. : 미제출 자료 추가 제출 요청(답변기한 : '23.10.10.)
- '23.10.10. : 미제출 자료에 대한 미제출 사유 제출
- '23.11.22. : 최종덤핑률(안) 및 이해관계인 개최 계획 통보
- '23.12.4. : 이해관계인 회의 개최

#### 다) 자료의 사용

- **(피요청인)** 재심사대상기간 중 한국으로의 수출이 없었으므로, 덤핑 조사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함<sup>15)</sup>
- **(요청인)** 피요청인이 한국 수출이 없다는 이유로 덤핑마진 계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조사실이 이용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덤핑마진을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함
- **(조사실 ①)** 피요청인은 한국 수출이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점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판매자료의 완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제출되어야 함
  - 또한, 피요청인 주장의 입증 여부와는 별개로 조사실은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제5항 등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종료로 인한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여부를 조사해야 함

14) 인터넷에 공개된 회사 일반현황 자료만 제출(답변서 섹션 B의 일부 항목)

15) 이해관계인 회의 양측 발언 요지('23.12.4.)

- (NSSC) 재심사대상기간 중 한국에 수출하지 않았으므로, 덤핑조사가 성립될 수 없으며, 필요한 범위 내 회사 일반정보 등의 자료를 제출했으므로, 조사 비협조 및 자료 제출 거부로 볼 수 없어 이용가능한 자료 사용은 불합리
- (요청인) NSSC가 대한국 수출이 없다는 이유로 덤핑마진 계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조사실이 WTO 반덤핑협정에 근거하여 이용가능한 자료로 덤핑마진을 계산한 것은 타당하며, 덤핑마진이 산출될 수 없다는 피요청인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최소한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덤핑률 산정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했다는 스스로의 주장에 반하는 것

- 설사, 한국 수출이 없더라도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덤핑마진과 공급자의 생산·판매·가격 상황, 한국과 공급국 및 국제 시장상황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조사실 ②)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1조16)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기간("23.3.15.~'23.4.26.)을 정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기한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통지함
- WTO 반덤핑협정 제6.8조에 따르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심사대상 공급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 판정이 내려질 수 있음을 규정함
- 또한, WTO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17)에 따르면, 이해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아 관련 정보가 입수되지 않을 경우, 협조하였을 때보다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조사실 ③) 한국 수출이 없다는 사실은 총매출, 조사·비조사대상물품의 매출·물량, 내수 및 한국·제3국 수출 금액·물량을 비교·분석하여 완전성 검증이 된 후에야 확인할 수 있으나, 피요청인은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음
-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덤핑마진과 공급자의 생산·판매·가격 상황<sup>18)</sup>, 한국과 공급국 및 국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나, 피요청인은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음

16)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1조 : 조사개시후 가능한 한 조속히 조사당국은 모든 이해당사자로부터 요청되는 정보와 이해당사자가 회신시 이러한 정보를 구성하는 방법을 상세히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당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정보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 국내산업에 의한 조사개시 신청서에 들어 있는 내용들을 포함, 이용가능한 사실을 근거로 당국이 자유로이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알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7)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 : 당국이 조사개시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를 포함하여 2차적인 출처로부터의 정보를 기초로 정상가격에 관한 조사결과를 포함한 판정을 내려야하는 경우, 당국은 특별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당국은 가능하다면 공표된 가격표, 공식 수입통계 및 세관보고서 등과 같이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조사과정에서 다른 이해당사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점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해당사자가 협조를 하지 않고 이로 인해 관련정보가 당국에 입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상황이 그 당사자가 협조하였을 때보다 그 당사자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하다.

18) 재심사대상공급자의 생산·판매·가격 상황은 재심사대상공급자가 덤핑방지관세 종료 시 덤핑 재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검토 요소로, 일반적으로 초과 생산능력 및 가동률, 생산량 변동 추세, 재고수준, 내수시장 원가 미만 판매 여부, 내수가격 대비 제3국 수출가격 수준, 한국 시장 판매 비중 변동 추이, 제3국 수출현황 등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다.

- 피요청인은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핵심자료인 생산원가, 내수판매, 수출가격 등의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음
- (조사실 ④) 피요청인은 덤핑마진 산정과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sup>19)</sup>,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함
-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에 따르면, 조사당국이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판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조사과정에서 다른 이해당사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을 비교·점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요청인은 15.01%의 덤핑률을 제시하면서 정상가격은 일본 철강신문에 공표된 재심사대상기간의 평균 일본 내수가격을 이용하였고, 덤핑가격은 한국무역협회의 재심사대상기간 재심사대상물품 평균가격을 적용하였음
- 그러나 한국무역협회의 자료는 해당 품목분류 번호의 모든 수입 물량에 대한 수입량과 수입액 통계로, 규격이 정해져 있는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량과 수입액에 대한 통계는 아님
- 이에 따라, 요청서 상의 덤핑률을 정확한 덤핑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 원심에서는 피요청인의 덤핑가격 등을 일정 부분 활용하고, 현지실사 등의 검증을 통해 조정요소 등을 반영함에 따라, 원심의 판정이 요청서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덤핑률이 도출된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부속서 2 등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원심의 덤핑률인 43.72%를 최종덤핑률로 산정함

19) 자료 요청 경과 : ①(조사실, '23.3.15.) 질의서 송부 → ②(NSSC, '23.5.10.) 핵심자료 미제출 → ③(조사실, '23.9.21.) 핵심자료 제출 재요청 → ④(NSSC, '23.10.10.) 핵심자료 미제출

## 라) 최종덤핑률

- 조사실은 피요청인의 덤핑률 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용가능한 자료로써 원심 조사결과 덤핑률인 43.72%을 피요청인의 덤핑률로 산정함

## 2) JFE(JFE Steel Corporation)

### 가) 공급자 개요 및 판매 현황

- JFE는 도쿄도에 소재하고 있고, JFE Holdings가 JFE 지분의 xxx%를 보유함
- 판매 현황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 나) 답변서 제출 현황

- '23.3.15. : 조사개시결정 통지 및 질의서 송부(답변기한 : '23.4.26.)
- '23.4.5. : 조사참여 신청서 접수
- '23.4.26. : 답변서 접수
- '23.11.22. : 최종덤핑률(안) 및 이해관계인 개최 계획 통보
- '23.11.27. : 이해관계인 회의 불참 의사 제출

### 다) 자료의 사용

- 조사실은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제5항 등에 따라, 덤핑방지 관세 종료로 인한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여부를 조사해야 함

-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1조<sup>20)</sup>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간('23.3.15.~'23.4.26.)을 정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기한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통지함
  - WTO 반덤핑협정 제6.8조에 따르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심사대상 공급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 판정이 내려질 수 있음을 규정함
  - 또한,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sup>21)</sup>에 따르면, 이해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아 관련 정보가 입수되지 않을 경우, 협조하였을 때보다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덤핑마진과 공급자의 생산·판매·가격 상황<sup>22)</sup>, 한국과 공급국 및 국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나, 피요청인은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음
- 피요청인은 덤핑마진 산정과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sup>23)</sup>,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함
  -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에 따르면, 조사당국이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판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조사과정에서 다른 이해당사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을 비교·점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20)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1조 : 조사개시후 가능한 한 조속히 조사당국은 모든 이해당사자로부터 요청되는 정보와 이해당사자가 회신시 이러한 정보를 구성하는 방법을 상세히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당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정보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 국내산업에 의한 조사개시 신청서에 들어 있는 내용들을 포함, 이용가능한 사실을 근거로 당국이 자유로이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알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1)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 : 당국이 조사개시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를 포함하여 2차적인 출처로부터의 정보를 기초로 정상가격에 관한 조사결과를 포함한 판정을 내려야하는 경우, 당국은 특별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당국은 가능하다면 공표된 가격표, 공식 수입통계 및 세관보고서 등과 같이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조사과정에서 다른 이해당사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점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해당사자가 협조를 하지 않고 이로 인해 관련정보가 당국에 입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상황이 그 당사자가 협조하였을 때보다 그 당사자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하다.

22) 재심사대상공급자의 생산·판매·가격 상황은 재심사대상공급자가 덤핑방지관세 종료 시 덤핑 재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검토 요소로, 일반적으로 초과 생산능력 및 가동률, 생산량 변동 추세, 재고수준, 내수시장 원가 미만 판매 여부, 내수가격 대비 제3국 수출가격 수준, 한국 시장 판매 비중 변동 추이, 제3국 수출현황 등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다.

23) 자료 요청 경과 : ① (조사실, '23.3.15.) 질의서 송부 → ② (JFE, '23.4.26.) 핵심자료 미제출



- 요청인은 15.01%의 덤핑률을 제시하면서 정상가격은 일본 철강신문에 공표된 재심사대상기간의 평균 일본 내수가격을 이용하였고, 덤핑가격은 한국무역협회의 재심사대상기간 재심사대상물품 평균가격을 적용하였음
- 그러나 한국무역협회의 자료는 해당 품목분류 번호의 모든 수입 물량에 대한 수입량과 수입액 통계로, 규격이 정해져 있는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량과 수입액에 대한 통계는 아님
- 이에 따라, 요청서 상의 덤핑률을 정확한 덤핑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 원심에서는 피요청인의 덤핑가격 등을 다른 조사대상공급자인 NSSC의 실제 자료 등을 활용함에 따라, 원심의 판정이 요청서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덤핑률이 도출된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부속서 2 등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원심의 덤핑률인 43.72%를 최종덤핑률로 산정함

## 라) 최종덤핑률

- 조사실은 피요청인의 덤핑률 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용가능한 자료로써 원심 조사결과 덤핑률인 43.72%을 피요청인의 덤핑률로 산정함

## 3) Yakin(Nippon Yakin Kogyo Co., Ltd)

### 가) 공급자 개요 및 판매 현황

- 공급자 개요 및 판매 현황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 나) 답변서 제출 현황

- '23.3.15. : 조사개시결정 통지 및 질의서 송부(답변기한 : '23.4.26.)
- '23.4.5. : 조사참여 신청서 접수
- '23.11.22. : 최종덤핑률(안) 및 이해관계인 개최 계획 통보

## 다) 자료의 사용

- 조사실은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제5항 등에 따라, 덤핑방지 관세 종료로 인한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여부를 조사해야 함
-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1조<sup>24)</sup>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간('23.3.15.~'23.4.26.)을 정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기한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통지함
  - WTO 반덤핑협정 제6.8조에 따르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심사대상 공급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 판정이 내려질 수 있음을 규정함
  - 또한, WTO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sup>25)</sup>에 따르면, 이해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아 관련 정보가 입수되지 않을 경우, 협조하였을 때보다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24)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1조 : 조사개시후 가능한 한 조속히 조사당국은 모든 이해당사자로부터 요청되는 정보와 이해당사자가 회신시 이러한 정보를 구성하는 방법을 상세히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당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정보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 국내산업에 의한 조사개시 신청서에 들어 있는 내용들을 포함, 이용가능한 사실을 근거로 당국이 자유로이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알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5)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 : 당국이 조사개시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를 포함하여 2차적인 출처로부터의 정보를 기초로 정상가격에 관한 조사결과를 포함한 판정을 내려야하는 경우, 당국은 특별한 신증을 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당국은 가능하다면 공표된 가격표, 공식 수입통계 및 세관보고서 등과 같이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조사과정에서 다른 이해당사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점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해당사자가 협조를 하지 않고 이로 인해 관련정보가 당국에 입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상황이 그 당사자가 협조하였을 때보다 그 당사자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하다.

-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덤핑마진과 공급자의 생산·판매·가격 상황<sup>26)</sup>, 한국과 공급국 및 국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나, 피요청인은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음
- 피요청인은 덤핑마진 산정과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sup>27)</sup>,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함
  -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에 따르면, 조사당국이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판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조사과정에서 다른 이해당사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을 비교·점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요청인은 15.01%의 덤핑률을 제시하면서 정상가격은 일본 철강신문에 공표된 재심사대상기간의 평균 일본 내수가격을 이용하였고, 덤핑가격은 한국무역협회의 재심사대상기간 재심사대상물품 평균가격을 적용하였음
  - 그러나 한국무역협회의 자료는 해당 품목분류 번호의 모든 수입 물량에 대한 수입량과 수입액 통계로, 규격이 정해져 있는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량과 수입액에 대한 통계는 아님
  - 이에 따라, 요청서 상의 덤핑률을 정확한 덤핑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 원심에서는 피요청인의 정상가격, 덤핑가격 등의 자료를 활용하고, 현지 실사 등의 검증을 통해 조정요소 등을 반영함에 따라, 원심의 판정이 요청서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덤핑률이 도출된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부속서 2 등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원심의 덤핑률인 22.53%를 최종덤핑률로 산정함

26) 재심사대상공급자의 생산·판매·가격 상황은 재심사대상공급자가 덤핑방지관세 종료 시 덤핑 재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검토 요소로, 일반적으로 초과 생산능력 및 가동률, 생산량 변동 추세, 재고수준, 내수시장 원가 미만 판매 여부, 내수가격 대비 제3국 수출가격 수준, 한국 시장 판매 비중 변동 추이, 제3국 수출현황 등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다.

27) 자료 요청 경과 : ① (조사실, '23.3.15.) 질의서 송부 → ② (JFE, '23.4.26.) 핵심자료 미제출

## 라) 최종덤핑률

- 조사실은 피요청인의 덤핑률 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용가능한 자료로써, 원심 조사결과 덤핑률인 22.53%을 피요청인의 덤핑률로 산정함

## 4) 그 밖의 공급자

- 그 밖의 공급자의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sup>28)</sup> 및 시행규칙 제17조제2항<sup>29)</sup>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한 공급자 등을 제외한 공급자의 덤핑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동 조사항은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한 공급자 등을 제외할 경우, 가중평균 할 수 있는 공급자가 없음
- 이에 따라,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WTO 반덤핑협정 제6.8조<sup>30)</sup> 및 부속서2 제7조<sup>31)</sup>에 따라, 22.53%를 적용하였음

---

28)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29)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 영 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평균 덤핑방지 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급자가 다수인 때에는 공급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 영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차액 등을 산정한 공급자

30)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 이해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내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달리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입수가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예비 및 최종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

31)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 : 당국이 조사개시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를 포함하여 2차적인 출처로부터의 정보를 기초로 정상가격에 관한 조사결과를 포함한 판정을 내려야하는 경우, 당국은 특별한 신증을 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당국은 가능하다면 공표된 가격표, 공식 수입통계 및 세관보고서 등과 같이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조사과정에서 다른 이해당사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점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해당사자가 협조를 하지 않고 이로 인해 관련정보가 당국에 입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상황이 그 당사자가 협조하였을 때보다 그 당사자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하다.

## 2. 수입물량의 변동

- 재심사대상물품의 전체 수입량은 '20년 xxx톤에서 '21년 xxx톤으로 감소하였으나, '22년 xxx톤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7.8% 증가하였음
-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량은 '19년 xxx톤, '20년 xxx톤, '21년 xxx톤, '22년 xxx톤으로 연평균 22.9% 증가하였으나, '22년 수입급증 원인은 포스코 태풍피해와 국내 조선사 수요증가에 따른 것임

### < 재심사대상물품 수입물량 현황 >

(단위 : 톤, %, %p)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연평균 증감률
		'19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전체 수입량		1,000	1,271 27.1%	466 △63.3%	1,253 168.9%	7.8%		
재심사대상물품 수입량		1,000	1,148 14.8%	311 △72.9%	1,856 495.9%	22.9%		

\*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국내산업 답변서

## 3. 재심사대상물품 공급국의 생산능력 및 수출여력

### 가. 공급국의 생산능력

- 피요청인이 제출한 공급 3사의 '22년 생산능력(xxx천톤)은 재심사기간 동안 평균 xxx%감소했고, '19년 xxx%에서 '22년 가동률 xxx%로 감소함

### < 재심사대상물품 공급자의 생산능력 >

(단위 : 천톤, %, %p)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연평균 증감률
		'19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생산능력 <sup>32)</sup> (a)		1,000	891 △11.0	869 △2.9	885 2.0	△4.1		
생산량(b)		1,000	789 △21.3	857 8.7	783 △8.5	△7.8		
가동률(b/a)			△10.1	9.2	△8.9			

\* 자료 : 일본측 공급사 의견서, 국내 생산자 답변서 및 실사자료

32) 공급사 의견서에 따르면 재심사대상물품 공급자 3사의 생산능력은 NSSC XXX만톤, Yakin XXX만톤, JFE XXX만톤임

나. 공급국의 對한국 수출 물량 추이

-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량은 '19년 xxx톤에서 '22년 xxx톤으로, 연평균 22.9% 증가했으나, 덤핑방지조치 이전('09년)에 비해 xxx% 이하로 감소함
- '22년 수입급증 원인은 포스코 태풍피해와 국내 조선사 수요증가에 따른 것임

< 재심사대상물품 수입량 및 시장점유율 현황 >

(단위 : 톤,%,%p)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연평균 증감률
		'19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재심사대상물품수입(a)		1,000	1,148 14.8%	311 △72.9%	1,856 495.9%	22.9%		

\* 재심사대상물품 수입량(톤): ('09) xxx → ('13) xxx → ('15) xxx → ('18) xxx → ('19) xxx → ('20) xxx → ('21) xxx → ('22) xxx

4. 제3국 수입규제조치 현황

- EU를 제외한 미국, 인도, 중국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해 수입규제가 적용 제외되어, 이들 국가로의 수출여건이 개선된다면 한국향 수출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제3국 수입규제 현황 >

국가	구분	내용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제외	'18년 3월 중국, 일본, EU등 전세계 주요 국가의 철강재(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포함)에 25%의 수입관세를 부과했으나 '22년 2월 부터 연간 125만톤('18~'19평균)까지 관세면제 합의
인도	비관세장벽 적용 제외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 Act), 인도로 철강제품 수출시 사전에 취득해야 되는 품질인증으로 일본은 철강제품 55개 품목(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포함)에 대한 사전인증을 취득함
중국	반덤핑관세 부과 적용 제외	상무부는 '19.7월 일본, 인도네시아 및 EU 등의 스테인리스 열연제품 반덤핑 관세(18.1~29.0%)부과 증으로 일본은 Yakin 18.1% 부과중이나 '23년 7월 일본이 WTO 패널에서 승소, 24년 5월까지 반덤핑 조치 종료기로 합의
EU	세이프가드 발동 적용 대상	'19년 7월부터 수입산 철강재 26개 품목(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포함)에 세이프가드 발동, 품목에 따라 국가쿼터와 글로벌 쿼터(연간 최대 3,882톤)선착순 적용. 쿼터 초과 시 25% 관세 부과중, 매년 리뷰절차를 통해 총 쿼터량 증량 및 개별 품목 쿼터 재검토 운영중이며 일본은 '22년 6월 EU 집행위원회 고시 Annex II 수량관리 규제대상에 포함됨

\* 자료 : 한국철강협회, 피요청인 자료

## 5.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검토 종합

- 조사실은 피요청인의 덤핑사실 여부, 재심사대상물품 수입물량의 변동, 공급국의 생산능력 및 수출여력, 제3국의 수입규제조치 현황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을 검토하였음
  - (덤핑사실 여부) 모든 피요청인이 덤핑률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답변서에 기초한 검토는 할 수 없었으며, 요청인이 제출한 자료는 덤핑률 산정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sup>33)</sup>
  - 이에 따라, 피요청인이 원심조사 시 제출한 자료로 덤핑률을 산정한 원심에서 덤핑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덤핑이 없다고 판단할 만한 자료나 근거가 원심의 덤핑률 이외에는 없어 덤핑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수입물량 변동)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량은 '19년 xxx톤, '20년 xxx톤, '21년 xxx톤, '22년 xxx톤으로 연평균 22.9% 증가했으나, 덤핑방지조치 이전('09년)에 비해서는 50% 이하로 감소함
  - (생산능력 및 가동률) 재심사대상국가의 생산능력은 재심사대상기간동안 연평균 xxx% 감소했으며, 가동률도 '19년 xxx%에서 '22년 xxx%로 감소함에 따라 일본산 재심사대상물품의 對한국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은 낮아 보임
  - (제3국 수입규제조치) EU를 제외한 미국, 인도, 중국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해 수입규제가 적용 제외되어, 이들 국가로의 수출여건이 개선된다면 한국향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피요청인의 덤핑사실 여부, 수입물량 변동, 공급국의 생산능력 및 수출여력, 제3국의 수입규제조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33) 요청인이 일본의 철강신문과 한국무역협회 자료 등을 제출했으나, 해당 자료들은 규격이 정해져 있는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량과 수입액에 대한 적절한 통계가 아님

### Ⅲ.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 < 검토할 사항 >

-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될 경우, 덤핑이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관련 법규

-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
  - 당국이 덤핑방지조치의 종료일자 이전에 자체적으로 개시한 검토 또는 동일자 이전 합리적인 기간내에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근거에 입각한 요청에 의하여 개시된 검토에서 관세의 종료가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을 초래할 것으로 당국이 판정하는 경우에는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덤핑방지조치의 효과

#### < 검토할 사항 >

- 원심 및 최근 재심 이후의 국내산업 관련 자료를 기초로 물량, 가격 등 지표 분석을 통해 덤핑방기관세 부과조치의 효과를 검토
- 물량에 미친 영향 : 덤핑방지조치 이후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 및 동종 물품의 판매량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감소하였는지 여부 검토
  - 가격에 미친 영향 : 덤핑방지조치 이후 재심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의 가격 변동에 대하여 검토
  -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 : 생산량·가동률·매출·판매량·재고·시장점유율·가격·이윤·생산성·고용·임금·현금수지·투자·연구개발 등에 미친 영향 검토

#### 가. 물량에 미친 영향

-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량은 '19년 xxx톤에서 '22년 xxx톤으로 재심사대상 기간 동안 연평균 22.9% 증가한바, 22년 수입급증 원인은 포스코 태풍 피해와 국내 조선업 수요증가에 의한 것임



- 기타국물품의 수입량은 '19년 xxx톤에서 '22년 xxx톤으로 재심사대상 기간 동안 연평균 5.4% 증가하였음
- 동종물품의 판매량은 '19년 xxx톤에서 '22년 xxx톤으로 재심사 대상 기간 동안 연평균 3.3% 증가하였음
- 국내소비는 '19년 xxx톤에서 '22년 xxx톤으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4.4% 증가하였음
- 재심사대상물품의 시장점유율은 '19년 xxx%에서 '22년에는 xxx%로 증가하였고, 기타국물품 시장점유율도 '19년 xxx%에서 '22년 xxx%로 증가하였음
-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은 '19년 xxx%에서 '22년 xxx%로 감소하였으나 덤핑방지조치 이전('09년) xxx% 보다 급증하였음

< 국내소비 현황 >

(단위 : 톤, %, %p)

구분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국내소비 (a=b+e)		1,000	1,083	8.3%	826	△23.7%	1,139	37.9%	4.4%
총수입 (b=c+d)		1,000	1,271	27.1%	466	△63.3%	1,253	168.9%	7.8%
재심사대상물품 수입(c)		1,000	1,148	14.8%	311	△72.9%	1,856	495.9%	22.9%
기타국물품수입 (d)		1,000	1,287	28.7%	487	△62.1%	1,170	140.2%	5.4%
동종물품판매 (e)		1,000	1,020	2.0%	946	△7.2%	1,101	16.4%	3.3%
시장 점 유 율	재심사대상물품 (c/a)			0.2		△2.1		3.8	
	기타국물품 (d/a)			4.2		△13.2		9.6	
	동종물품 (e/a)			△4.3		15.2		△13.4	

\*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국내 생산자 답변서 및 실사결과

나. 가격에 미친 영향

- 재심사대상물품의 톤당 판매가격<sup>34)</sup>은 '19년 xxx천원에서 '22년 xxx천원으로 연평균 27.0% 상승하였음
-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19년 xxx천원에서 '22년 xxx천원으로 상승하여 연평균 14.2% 상승하였음
- 재심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은 '20년을 제외하면 증가 추세이고, 가격 차이는 재심사대상물품이 '19년 xxx천원, '21년 xxx천원, '22년 xxx천원 높았고, 재심사대상물품의 가격이 덤핑방지조치 이전('09년) xxx천원에서 22년 xxx천원 상승하였음

< 판매가격 현황 >

(단위 : 천원/톤, %)

구분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재심사대상물품(a)		1,000	886 △11.4	1,275 43.9	2,050 60.7	27.0
동종물품(b)		1,000	1,007 0.7	1,105 9.8	1,490 34.8	14.2
가격차이(c=a-b)			△ 음수전환	양수전환	양수확대	

\*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국내 생산자 답변서 및 실사결과

다.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

(1) 생산량 및 가동률

- 동종물품의 생산능력은 '19년 xxx톤에서 '22년 xxx톤으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0.2% 증가함
  - 동종물품의 생산량은 '19년 xxx톤에서 '22년 xxx톤으로 연평균2.4% 증가하였고, 가동률도 '19년 xxx%, '22년 xxx% 증가하였음
  - 덤핑방지조치 이전('09년)과 비교시 생산량 xxx톤에서 xxx톤으로 증가함

34) 재심사대상물품 톤당 판매가격 = CIF가격 + 관세 + 통관 제비용

< 생산량 및 가동률 >

(단위 : 톤, %, %p)

구분 \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생산능력(a)	1,000	949	△5.1	977	3.0	1,006	2.9	0.2
생산량(b)	1,000	1,036	3.6	971	△6.3	1,072	10.5	2.4
가동률(b/a)			6.5		△6.9		5.2	

\* 자료 : 국내생산자 답변서 및 실사 답변서

(2) 판매 및 재고

- 동종물품의 총출하량은 '19년 xxx톤에서 '22년 xxx톤으로, 재심사 상기간 동안 연평균 1.5% 증가했고, 총출하금액은 연평균 18.8% 증가하였음
- 동종물품의 국내출하량은 '19년 xxx톤에서 '22년 xxx톤으로 재심사 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3.3% 증가했고, 국내출하금액은 연평균 20.5% 증가하였음
  - 동종물품의 수출량은 '20년 xxx% 감소, '21년 xxx% 증가, '22년 xxx% 감소하여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7.3% 감소하였으나, 수출금액은 '20년 xxx% 감소 후 '21년 xxx%, '22년 xxx% 증가하여 연평균 10.8% 증가하였음
- 동종물품의 기말재고는 '19년 xxx톤, '20년 xxx톤, '21년 xxx톤, '22년 xxx톤으로 연평균 4.6% 증가하였음

< 매출, 판매량 및 재고 >

(단위 : 톤, 백만원, %)

구분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기초재고(a)		1,000	790	△21.0	1,049	32.8	895	△14.7	△3.6
생산량(b)		1,000	1,036	3.6	971	△6.3	1,072	10.5	2.4
총출하 (g=c+d+e+f)	물량	1,000	984	△1.6	965	△1.9	1,047	8.5	1.5
	금액	1,000	993	△0.7	1,076	8.3	1,676	55.8	18.8
국내출하(c)	물량	1,000	1,020	2.0	946	△7.2	1,101	16.4	3.3
	금액	1,000	1,026	2.6	1,045	1.9	1,749	67.3	20.5
수출(d)	물량	1,000	836	△16.4	940	12.4	797	△15.2	△7.3
	금액	1,000	852	△14.8	1,088	27.7	1,360	24.9	10.8
내부대체(e)									
타계정대체(f)	물량	1,000	1,243	24.3	1,657	33.3	1,650	△0.4	18.2
	금액	1,000	1,317	31.7	1,825	38.6	2,444	33.9	34.7
재고(h=a+b-g)		1,000	1,328	32.8	1,134	△14.6	1,145	1.0	4.6

\* 자료 : 국내생산자 답변서 및 실사결과

(3) 시장점유율

- 국내소비가 '19년 xxx톤에서 '22년 xxx톤으로 증감을 반복하면서 연평균 4.4% 증가하는 동안 동종물품 판매량도 같은 추세를 보이면서 연평균 3.3% 증가했는데,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은 '19년 xxx%에서 '22년 xxx%로 감소하였으나, 평균 70%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덤핑방지 조치 이전('09년) 40%대와 비교시 급증하였음.

< 시장점유율 >

(단위 : 톤, %, %p)

구분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국내소비		1,000	1,083	8.3%	826	△23.7%	1,139	37.9%	4.4%
동종물품판매(b)		1,000	1,020	2.0%	946	△7.2%	1,101	16.4%	3.3%
시장점유율(b/a)				△4.3		15.2		△13.4	

\* 자료 : 국내생산자 답변서 및 실사결과

(4)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동종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19년 xxx천원에서 '22년 xxx천원으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4.2% 상승
- 동종물품의 톤당 제조원가도 '19년 xxx천원에서 '22년 xxx천원으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7.5% 증가
  - 판매가격 대비 제조원가 비중은 '19년에는 xxx%이었고, '22년에는 xxx%로 재료비의 제조원가 비중이 매우 높음

< 가격 및 제조원가 >

(단위 : 천원/톤, %, %p)

구분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재심사대상물품		<u>1,000</u>	<u>886</u>	△11.4	<u>1,275</u>	43.9	<u>2,050</u>	60.7	27.0
동종물품 판매가격(e)		<u>1,000</u>	<u>1,007</u>	0.7	<u>1,105</u>	9.8	<u>1,490</u>	34.8	14.2
제조원가	전체 (d=a+b+c)	<u>1000</u>	<u>1,001</u>	0.1	<u>1,102</u>	10.2	<u>1622</u>	47.1	17.5
	재료비(a)	<u>1000</u>	<u>997</u>	△0.3	<u>1,100</u>	10.3	<u>1,645</u>	49.6	18.0
	노무비(b)	<u>1000</u>	<u>1,014</u>	1.4	<u>1,296</u>	27.8	<u>1,254</u>	△3.3	7.8
	경비(c)	<u>1000</u>	<u>1,094</u>	9.4	<u>1,047</u>	△4.3	<u>1,264</u>	△20.7	8.1
비중	전체(d/e)			△0.6		0.3		8.9	
	재료비(a/e)			△0.9		0.4		10.0	
	노무비(b/e)			0.0		0.4		△0.8	
	경비(c/e)			0.3		△0.5		△0.3	

\* 자료 : 국내생산자 답변서 및 실사결과

(5) 이윤

-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산업의 내수부문 영업이익은 '19년 xxx백만원 흑자에서, '20년 xxx백만원 흑자확대, '21년 xxx만원으로 흑자지속했으나, '22년에는 xxx백만원 적자전환되었음
  -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도 '19년 xxx% 흑자에서, '20년 xxx% 흑자확대, '21년 xxx% 흑자지속, '22년에는 xxx% 적자전환을 기록하였음

< 내수 영업이익률 >

(단위 : 백만원, %, %p)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연평균 증감률
		'19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매출액(a)	1000	1,026	2.6	1,045	1.9	1,749	67.3	20.5
매출원가(b)	1000	1,021	2.1	1,043	2.2	1,786	71.2	21.3
매출총이익(c=a-b)	1000		흑자확대		흑자지속		적자전환	△10.7
판매관리비(d)	1000	1,045	4.5	1,072	2.6	1,243	16.0	7.5
영업이익(e=c-d)			흑자확대		흑자감소		적자전환	
영업이익률(e/a)			0.4		△0.4		△1.1	

\* 자료 : 국내생산자 답변서 및 실사결과

- 재심사대상물품의 가격이 국내동종물품보다 xx%~xx% 고가이고, 가격차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내동종물품의 내수영업이익률의 하락이 재심사대상물품으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 전체 강종 평균 판매 가격 >

(단위: 천원/톤, %)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연평균 증감률
		'19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재심사대상물품(a)	1,000	886	△11.4	1,275	43.9	2,050	60.7	27.0
동종물품(b)	1,000	1,007	0.7	1,105	9.8	1,490	34.8	14.2
가격차이(c=a-b)			△ 음수전환		양수전환		양수확대	

\*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국내생산자 답변서 및 실사결과

(6) 생산성

-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부문 고용인원은 연평균 xx% 증가했고, 생산량도 연평균 xx% 증가함. 총매출액·총부가가치도 각각 연평균 45.4%, 17.4% 모두 증가하였음
- 1인당 생산량은 '19년 xxx톤에서 '22년 xxx톤으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5% 증가했고, 1인당 매출액도 '19년 xxx백만원에서 '22년 xxx백만원으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5.8% 증가하였음
- 1인당 부가가치는 '19년 xxx백만원에서 '22년 xxx백만원으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6.6% 감소하였음

< 생산성 >

(단위 : 명, 천톤, 백만원, %)

구분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고용인원(a)		1,000	1,115	11.5	1,442	29.3	1,981	37.3	25.6
생산량(b)		1,000	1,089	8.9	1,535	40.7	2,079	35.3	27.3
총매출액(c)		1,000	1,037	3.7	1,786	72.3	3,076	72.3	45.4
총부가가치(d)		1,000	1,132	13.2	2,413	113.1	1,619	△32.9	17.4
1인당 생산량(b/a, 톤)		1,000	975	△2.5	1,061	8.8	1,046	△1.4	1.5
1인당 매출액(c/a)		1,000	929	△7.1	1,238	33.2	1,553	25.4	15.8
1인당 부가가치(d/a)		1,000	1,012	1.5	1,671	64.8	815	△51.2	△6.6

\* 자료 : 국내생산자 답변서 및 실사결과

(7) 고용 및 임금

- 국내산업의 연평균 고용인원은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생산직은 11.7%, 사무직은 13.0% 증가하여 전체 고용인원은 연평균 12.1% 증가하였음
- 1인당 평균임금은 '20년 전년대비 6.8% 증가 이후 '21년 2.7% 감소, '22년 16.9%감소,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4.8% 감소하였음

< 고용 및 임금 >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연평균 고용인원	생산직	1,000	1,059	5.9	1,078	1.9	1,392	29.1	11.7
	사무직	1,000	1,222	22.2	1,278	4.5	1,444	13.0	13.0
	계	1,000	1,115	11.5	1,147	2.9	1,410	22.9	12.1
1인당 평균임금	생산직	1,000	1,021	2.1	917	△10.2	760	△17.0	△8.7
	사무직	1,000	1,113	11.3	1,188	6.7	975	△17.9	△0.8
	계	1,000	1,068	6.8	1,040	△2.7	864	△16.9	△4.8
총 임금	생산직	1,000	1,087	8.7	992	△8.7	1,058	6.7	1.9
	사무직	1,000	1,367	36.7	1,512	10.6	1,415	△6.4	12.3
	계	1,000	1,173	17.3	1,151	△1.8	1,168	1.4	5.3

\* 자료 : 국내생산자 답변서 및 실사결과

**(8)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 설비투자액은 '19년 xxx백만원에서 '22년 xxx백만원으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35.5% 감소하였음
- 연구개발비는 '19년 xxx백만원에서 '22년 xxx백만원으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3.7% 증가하였음

**< 설비 투자 및 연구개발 금액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설비투자	<u>1,000</u>	<u>257</u>	△74.3	<u>14,000</u>	5348.4	<u>267.8</u>	△98.1	△35.5
연구개발	<u>1,000</u>	<u>1,087</u>	8.7	<u>1,440</u>	32.5	<u>1,469.8</u>	2.0	13.7

\* 자료 : 국내생산자 답변서 및 실사결과



라. 재심사대상물품 이외의 영향

< 검토할 사항 >

-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아래의 재심사대상물품 이외의 요인이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 분석
  - 덤핑방지조치를 받고 있지 않은 수입물품의 물량 및 판매가격, 기술개발, 국내 수요 및 소비행태의 변화, 국내산업의 수출, 주요 원자재 가격 등

관련 법규

- WTO 반덤핑협정 제3.5조
  - 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아니된다. 이점에서 관련될 수 있는 요소에는 특히, 덤핑가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수입품의 수량 및 가격, 수요감소 혹은 소비형태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무역제한적 관행 및 이들간의 경쟁, 기술개발, 국내산업의 수출실적 및 상품 생산성의 검토를 통하여 포함된다

(1) 재심사대상물품을 제외한 수입물품의 물량 및 시장점유율

< 재심사대상물품을 제외한 수입물품(기타국)의 수입물량 >

(단위 : 톤, %, %p)

구분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물량	국내소비(a=b+e)	<u>1,000</u>	<u>1,083</u>	8.3	<u>826</u>	△23.7	<u>1,139</u>	37.9	4.4
	총수입(b=c+d)	<u>1,000</u>	<u>1,271</u>	27.1	<u>466</u>	△63.3	<u>1,253</u>	168.9	7.8
	재심사대상물품(c)	<u>1,000</u>	<u>1,148</u>	14.8	<u>312</u>	△72.9	<u>1,856</u>	495.9	22.9
	기타국물품수입(d)	<u>1,000</u>	<u>1,287</u>	28.7	<u>487</u>	△62.1	<u>1,170</u>	140.2	5.4
	동종물품 판매(e)	<u>1,000</u>	<u>1,020</u>	2.0	<u>946</u>	△7.2	<u>1,101</u>	16.4	3.3
시장 점유 율	재심사대상물품(c/a)			0.2		△2.1		3.8	
	기타국물품수입(d/a)			4.2		△13.2		9.6	
	동종물품(e/a)			△4.3		15.2		△13.4	

\*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국내생산자 답변서 및 실사결과

-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방지조치를 받고 있지 않은 기타국물품의 수입량은 '19년 xxx톤, '20년 xxx톤 증가, '21년 xxx톤으로 감소 후, '22년 xxx톤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5.4% 증가함

- 기타국물품 시장점유율은 '19년 xxx%, '20년 xxx%에서 '21년 xxx%로 감소후 '22년 xxx%로 증가함

(2) 재심사대상물품을 제외한 수입물품의 판매가격

-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기타국 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19년 xxx천원, '20년 xxx천원으로 하락후, '21년 xxx천원 및 '22년 xxx천원으로 점차 상승하여 연평균 xxx% 상승하였음
- 기타국 물품과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차이는 '19년 xxx천원, '21년 xxx천원 기타국 물품의 가격이 높았다가, 22년 xxx천원으로 동종 물품의 가격이 높아짐

< 재심사대상물품을 제외한 수입물품(기타국) 수입물품의 판매가격 >

(단위 : 천원/톤, %)

구분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재심사대상물품(a)		1,000	886	△11.4	1,275	43.9	2,050	60.7	27.0
기타국물품(b)		1,000	916	△8.4	1,117	21.9	1,436	28.6	12.8
국내동종물품(c)		1,000	1,007	0.7	1,105	9.8	1,490	34.8	14.2
가격 차이	a-c			음수전환		양수전환		양수확대	
	b-c			음수전환		양수전환		음수전환	
	b-a			음수감소		음수확대		음수확대	

\*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및 국내생산자 답변서 및 실사결과

(3) 국내 수요의 변화

- 국내소비는 '19년 xxx톤, '20년 xxx톤으로 증가하다가 '21년 xxx톤으로 감소, '22년 xxx톤으로 증가하여,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4.4% 증가하였음

< 국내소비 현황 >

(단위 : 톤, %)

구분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국내소비		1,000	1,083	8.3	826	△23.7	1,139	37.9	4.4	
재심사대상 물품 수입		1,000	1,148	14.8	312	△72.9	1,856	495.9	22.9	
동종물품 내수판매		1,000	1,020	2.0	946	△7.2	1,101	16.4	3.3	

\*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국내생산자 답변서 및 실사결과

-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은 '19년 xxx톤에서 '20년 xxx톤으로 2.0% 증가, '21년 xxx톤으로 7.2% 감소, '22년 xxx톤으로 16.4% 증가하였으며, 심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3.3% 증가하였음
-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량은 '19년 xxx톤에서 '20년 xxx톤으로 14.8% 증가, '21년 xxx톤으로 72.9% 감소하다가 '22년 xxx톤으로 증가하여,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22.9% 증가하였음
-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소비는 연평균 4.4% 증가하였고,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도 연평균 3.3% 증가하였음

(4) 수출실적

-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산업의 수출량은 '19년 xxx톤, '20년 xxx톤으로 16.4% 감소, '21년 xxx천톤으로 12.4% 증가, '22년 xxx톤으로 15.2% 감소하여 연평균 7.3% 감소하였음
- 총출하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년 xxx%에서 '20년 xxx%로 감소후, '21년 xxx% 증가, '22년 xxx%감소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xxx% 감소하였음

< 국내산업의 수출동향 >

(단위 : 톤, %)

구분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총출하(a=b+c)		1000	984	△1.6	965	△1.9	1047	8.5	1.5
내수판매(b)		1000	1020	2.0	946	△7.2	1101	16.4	3.3
수출(c)		1000	836	△16.4	940	12.4	797	△15.2	△7.3
수출비중(c/a)				△3.5		2.9		△4.9	

\* 자료 : 국내생산자 답변서 및 실사결과

(5) 주요 원자재 가격

-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제조원가 중 원재료(Black plate)의 비중은 니켈의 시세가 물품 수요·생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니켈 고시가격표를 기준으로 톤당 평균가격을 구하면, '19년 \$xxx, '20년 \$xxx, '21년 \$xxx, '22년 \$xxx이며,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23.0% 상승하였음
  -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의 연평균 증감률이 '제조원가 중 원재료비', 니켈 고시가격 연평균 증가율보다 낮음

< 원자재 가격비중 >

(단위 : 천원/톤, \$/톤, %, %p)

구분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동종물품 판매가격		1,000	1,007	0.7	1,106	9.9	1,490	34.8	14.2
제조원가(a)		1,000	1,001	△0.1	1,102	10.2	1,622	47.1	17.5
원재료비(b) (Black plate)		1,000	967	△3.3	1,148	18.8	1,147	△0.1	4.7
비중(c=b/a)				△3.0p		7.3p		△34.2p	
재심사대상물품 판매가격		1,000	886	△11.4	1,275	43.9	2,050	60.7	27.0
니켈 고시가격		1,000	991	△0.9	1,327	33.9	1,859	40.1	23.0
몰리브덴 고시가격		1,000	768	△23.2	1,364	77.5	1,531	12.3	15.2

\* 자료 : 국내생산자 답변서 및 실사결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 재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니켈 및 몰리브덴 가격이 '19~'22년 기간 동안 연평균 각각 23.0%, 15.2% 상승함(International Monetary Fund)

마. 덤핑방지조치의 국내산업피해에 미친 영향 종합

- 재심사대상물품 수입량은 덤핑방지조치 이전('09년) xxx톤에서 22년 xxx톤으로 감소하여 덤핑방지조치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됨
  - \* 재심사대상물품 수입량(톤) : ('09) xxx → ('13) xxx → ('15) xxx → ('18) xxx → ('19) xxx → ('20) xxx → ('21) xxx → ('22) xxx
  - 덤핑방지조치를 받고 있지 않은 기타국(중국산, 인도산) 물품의 수입량은 덤핑방지 조치 이전('09년) xxx톤에서 '22년 xxx톤으로 증가하였음
  - \* 기타국 수입량(톤) : ('09) xxx → ('13) xxx → ('15) xxx → ('18) xxx → ('19) xxx → ('20) xxx → ('21) xxx → ('22) xxx
- 재심사대상물품의 가격은 덤핑방지조치 이전('09년) xxx천원에서 22년 xxx천원 상승하였고, 덤핑방지조치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됨
  - \* 재심사대상물품 판매가격(천원/톤) : ('09) xxx → ('13) xxx → ('15) xxx → ('18) xxx → ('19) xxx → ('20) xxx → ('21) xxx → ('22) xxx
  - \*\* 동종물품 판매가격(천원/톤) : ('09) xxx → ('13) xxx → ('15) xxx → ('18) xxx → ('19) xxx → ('20) xxx → ('21) xxx → ('22) xxx
- 덤핑방지조치 이전('09년) 국내 동종물품의 생산량은 xxx톤에서 22년 xxx톤으로 증가하였고, 내수판매량도 xxx톤에서 22년 xxx톤으로 증가, 시장 점유율도 xxx%에서 22년 xxx% 증가했음
  - \* 동종물품 생산량(톤) : ('09) xxx → ('13) xxx → ('15) xxx → ('18) xxx → ('19) xxx → ('20) xxx → ('21) xxx → ('22) xxx
  - \*\* 내수판매량(톤) : ('09) xxx → ('13) xxx → ('15) xxx → ('18) xxx → ('19) xxx → ('20) xxx → ('21) xxx → ('22) xxx
  - \*\*\* 시장점유율(%) : ('09) xxx → ('13) xxx → ('15) xxx → ('18) xxx → ('19) xxx → ('20) xxx → ('21) xxx → ('22) xxx
- 덤핑방지조치로 인해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량이 급감했고, 판매가격과 국내산업의 시장점유율이 덤핑방지조치 이전('09년)과 비교하여 대폭 상승하였고, 영업이익률은 적자 완화되어, 덤핑방지조치의 국내산업 피해 구제 효과가 있었음

## 2. 덩핑방지조치 종료시 국내산업피해의 전망

### 가. 재심사대상물품 공급국의 생산능력

- (피요청인) 재심사대상물품 공급자인 일본 NSSC, Yakin, JFE 3사의 연간 생산능력은 '19년 xxx천톤에서 '22년 xxx천톤으로 감소하여, 연평균 xx% 감소했으며, 가동률도 '19년 xx%에서 '22년 xx%로 감소했음

#### < 일본 재심사대상물품 공급자의 생산능력 >

(단위 : 톤, %, %p)

구분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생산능력(a)									
	NSSC								
	Yakin								
	JFE								
생산량(b)									
	NSSC								
	Yakin								
	JFE								
가동률(b/a)									
	NSSC								
	Yakin								
	JFE								

\* 자료 : 일본측 공급사 의견서

- 해외철강 정보지 'CRU Monitor'통계는 추계치이고, 피요청인들이 직접 제출한 통계를 고려해야 하며, 한국으로 수출 물량이 많았던 NSSC는 설비축소 및 통합으로 감산을 진행하고 있고, 다른 2개 공급자도 공정상 한계로 증산의 여지가 없음을 주장

- (요청인) 공급자가 산업피해와 관련된 자료중 공급사별 생산능력, 생산량, 가동률을 제출하였지만 덩핑률 산정을 위한 수출자 질의답변에는 일부만 답변 하였기에 자료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

(단위 : 천톤, %, %p)

구분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생산능력(a)									
생산량(b)									
가동률(b/a)									

\* 자료 : CRU Market Outlook

- (조사실) 피요청인은 공급자의 생산능력에 대하여 의견서를 통해 공급 3사의 실제 생산량 및 가동 일수, 병목공정 등에 근거하여 산출한 생산능력 데이터를 제출하였음. 공급3사가 제출한 생산능력 데이터는 직접자료이며 이전 2차 종료 재심사 때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이고, 피요청인이 제출한 생산 능력 도출방법이 동종물품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생산자의 생산능력 도출방법과 동일하며, 간접자료인 해외철강 정보지 CRU Monitor통계보다 정확 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조사원칙\*에 따라 피요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였음. 아울러 NSSC의 5개\*\* 생산공장중 기누우라(衣浦) 공장 생산설비의 매각처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함
  -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 및 25조6항 규정
  - \*\* 카시마(鹿島), 아마구치 히카리(山口光), 아마구치 슈난(山口周南),아와타(八幡),기누우라(衣浦)
- 피요청인이 제출한 공급3사의 '22년 생산능력(xxx천톤)은 재심사기간 동안 평균 xx%감소했고, '19년 xx%에서 '22년 가동률 xx%로 감소함

**< 재심사대상물품 공급자의 생산능력 및 여력 >**

(단위 : 천톤, %, %p)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연평균 증감률
		'19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생산능력 <sup>35)</sup> (a)	<u>1,000</u>	<u>891</u>	△11.0	<u>869</u>	△2.9	<u>885</u>	2.0	△4.1
생산량(b)	<u>1,000</u>	<u>789</u>	△21.3	<u>857</u>	8.7	<u>783</u>	△8.5	△7.8
가동률(b/a)			△10.1		9.2		△8.9	
생산여력(a-b)	<u>1,000</u>	<u>1,636</u>	63.6	<u>954</u>	△41.7	<u>1,635</u>	71.4	17.8

\* 자료 : 일본측 공급사 의견서, 국내 생산자 답변서 및 실사결과

35) 공급사 의견서에 따르면 재심사대상물품 공급자 3사의 생산능력은 NSSC XX만톤, Yakin XX만톤, JFE XX만톤임

나. 재심사대상물품 공급국의 수출여력

□ 제3국의 수입규제조치 현황

- (요청인) 미국, EU, 중국, 인도 등 국가등의 최근 스테인리스 후판에 대한 무역규제가 증가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까운 한국 시장으로 저가 후판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국가	구분	내용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25% 관세부과 중
중국	반덤핑관세 부과	18.1~103.1% 관세부과중
유럽	세이프가드 발동	글로벌 쿼터 적용으로 쿼터 초과시 25%
인도	비관세장벽	BIS 인증 획득 의무화

- (피요청인)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대해서는 적용제외로 결정되어 對미수출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고, 중국의 반덤핑 조치도 23년 7월 일본정부가 WTO분쟁에서 승소하여 중국이나 대만으로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며, 한국시장에 대한 공급 확대는 없을 것이라 주장
- (조사실) EU를 제외한 미국, 인도, 중국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수입규제가 적용 제외되어, 이들 국가로의 수출여건이 개선된다면, 한국향 수출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제3국 수입규제 현황 >

국가	구분	내용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제외	'18년 3월 중국, 일본, EU등 전세계 주요 국가의 철강재(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포함)에 25%의 수입관세를 부과했으나 '22년 2월 부터 연간 125만톤('18~'19평균)까지 관세면제 합의
인도	비관세장벽 적용 제외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 Act), 인도로 철강제품 수출시 사전에 취득해야 되는 품질인증으로 일본은 철강제품 55개 품목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포함)에 대한 사전인증을 취득함
중국	반덤핑관세 부과 적용 제외	상무부는 '19.7월 일본, 인도네시아 및 EU 등의 스테인리스 열연 제품 반덤핑 관세(18.1~29.0%)부과 중으로 일본은 Yakin 18.1% 부과중이나 '23년 7월 일본이 WTO 패널에서 승소, 24년 5월까지 반덤핑 조치 종료기로 합의
EU	세이프가드 발동 적용 대상	'19년 7월부터 수입산 철강재 26개 품목(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포함)에 세이프가드 발동, 품목에 따라 국가쿼터와 글로벌 쿼터(연간 최대 3,882톤)선착순 적용. 쿼터 초과 시 25% 관세 부과중, 매년 리뷰절차를 통해 총 쿼터량 증량 및 개별 품목 쿼터 재검토 운영중이며 일본은 '22년 6월 EU 집행위원회 고시 Annex II 수량관리 규제대상에 포함됨

\* 자료 : 한국철강협회, 피요청인 자료



□ 일본산 재심사대상 물품의 수출 물량 추이

- (요청인)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제품의 對한국 수출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 전체 수출비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으로의 공급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

<일본의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수출 현황>

(단위 : 톤,%)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수출물량	수출비중	수출물량	수출비중	수출물량	수출비중	수출물량	수출비중
한국	15,715	29	17,582	32	12,734	24	20,753	44
중국	13,644	25	17,704	32	16,121	31	7,755	16
기타아시아	11,924	22	11,346	20	9,542	18	6,442	14
미국	3,782	7	4,074	7	7,098	14	5,522	12
기타국가	9,513	17	5,033	9	6,773	13	6,436	14
합계	54,578	100	55,738	100	52,268	100	46,907	100

\*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 (피요청인) UN Comtrade Database통계는 HS코드 6단위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추계한 것에 불과하고, 재심사대상물품이 아닌 품목도 통계에 포함되어 있어, 공급자가 제출한 판매통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일본의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수출 현황>

(단위 : 톤,%)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재심사대상물품반입				
통관수입(부과제외)				
합계				

\* 자료 : 공급 3사 의견서

- (조사실) 조사실은 한국 관세청의 HS코드 10단위 통관 자료를 검토한 바,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량<sup>36)</sup>은 '19년 xxx톤에서 '22년 xxx톤으로, 연평균 22.9% 증가했으나, 덤핑방지조치 이전('09년)에 비해 50% 이하로 감소함. '22년 수입급증 원인은 포스코 태풍피해와 국내 조선사 수요증가에 따른 것임

<일본의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수출 현황 >

(단위 : 톤,%,%p)

구분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연평균 증감률
		수출물량	증감률	수출물량	증감률	수출물량	증감률	수출물량	증감률	
재심사대상물품수입		1,000		1,148	14.8	312	△72.9	1,856	495.9	22.9

\* 재심사대상물품 수입량(톤) : ('09) xxx → ('13) xxx → ('15) xxx → ('18) xxx → ('19) xxx → ('20) xxx → ('21) xxx → ('22) xxx

36) 보세공장은 과세보류 지역이나 물리적으로는 국내에 위치하므로 물량 흐름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 통계시 구분(수입종류 12 보세구역, 21일반수입 등)으로 집계함

□ 허용공차를 이용한 수입물량 검토

- (요청인) 덩핑 조치이후 재심사대상물품(두께 8~80mm, 너비 1,000~3,270 mm)에 대한 허용공차 수입신고로 관세를 회피하여 수입되고 있다 주장
  - 같은 공정에서 생산되는 유사한 비대상제품은 추가적인 큰 비용없이 대상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어 수출여력으로 볼 수 있음
- (피요청인) 한국향 물품은 품질과 고객의 요구사항 등 비가격적 요소가 중시되어 전량 주문자 생산방식이므로 규격변경은 생산비용만 가중됨
- (조사실) 조사실은 1차 종료재심사 조사시 허용공차 범위내 제품 수입 물량의 재심사대상물품 전환가능성에 대해서 허용공차 물량만큼을 공급국의 수출여력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2차 종료재심사 조사시 구매자와 판매자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상거래 관행으로 규정하여, 최종 판정에서 고려하지 않았으며, 금번 3차 종료재심사에서 2차 종료재심사에서 결정한 사항을 변동시킬만한 사항이 없어 허용공차를 동일한 사유로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 보세구역 반입 물량 추이

- (요청인) 요청인은 원심 조치 이후에도 보세구역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보세구역내에서 동종물품을 판매하고 있어 일본산 재심사물품과 경쟁하고 있고, 반덤핑관세 부과가 종료되면 보세구역의 반입량과 보세구역 이외의 추가적인 물량이 수입되어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것이라고 주장함
- (피요청인) 보세구역으로 반입된 물량은 선박, 플랜트 제조에 투입되어 해외로 재수출되고 있고, 한국내로 수입될 가능성은 없으며, 국내산업 피해 분석은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보세공장에 반입되어 수출용에 사용된 물량은 국내산업 피해 분석 시 제외해야 한다 주장
- (조사실) 조사실은 지난 2차 최종판정에서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물량에 대해 국내 산업피해 분석에서는 제외했으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이후 보세구역 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향후 산업피해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바 있음. 따라서 금번 3차 종료 재심사에서도 반덤핑관세 부과 종료 이후, 보세구역 내 반입되는 물량의 국내유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일본산 재심사대상물품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 물량을 조사함

\* (덤핑방지조치경과) : 원심 ('11. 4. 21), 1차 재심('16. 1. 6), 2차 재심('20. 7. 14)

- 반덤핑 조치이전 09년 일본산 재심사물품의 보세구역 반입량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15년 xxx톤 증가이후 '19년 xxx톤으로 감소하였고, 22년 xxx톤으로 증가한바, 포스코 태풍피해와 국내 조선사 수요증가에 따른 것임
- 보세구역 내 반입되는 물량의 통관수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별도자료에 따르면, 재심사 대상기간중 1개 보세 공장에서 반입되는 물량의 5% 정도가 제품 과세되어 국내로 수입되었으며 나머지 95% 정도는 보세 공장 내에서 제조 가공되어 수출되고 있음을 확인함

< 보세구역내 재심사대상물품 반입 및 동종물품 내수판매량 추이 >

(단위 : 톤,%)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연평균 증감률
		'19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재심사 대상물품	보세반입	1,000	1,126	12.6	288	△74.4	1,888	555.8	23.6	
	통관수입	1,000	2,367	136.7	1,673	△29.3	0	-	-	
	합계	1,000	1,148	14.8	311	△72.9	1,856	495.9	22.9	
국내동종 물품판매	보세판매	1,000	1,410	41.0	1,026	△27.3	1,643	60.2	18.0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및 국내생산자 답변서 및 실사결과

- 일본산 재심사대상물품의 강종에 따른 수입물량을 검토한바, 범용 300<sup>37)</sup> 계열 강종은 '19년 xxx%, '21년 xxx%에서 '22년 xxx%로 급감했으며,
- 반면, 특수 강종 400계열은 '19년 xxx%, '21년 xxx%에서 '22년 xxx%로 급증했음. '22년 전체 수입이 증가한 것은 '22년 9월 발생한 포스코 태풍 피해와 국내 조선업 수요증가에 의한 것임

< 재심사대상물품의 강종별 비중 >

(단위 : 톤, %, %p)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연평균 증감률
		'19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재심사대상물품(a)		1,000	1,148	14.8	311	△72.9	1,856	495.9	22.9	
	304계열(b)	1,000	1,394	39.4	142	△89.8	290	104.8	△33.8	
	316계열(c)	1,000	547	△45.3	804	47.1	666	△17.1	△12.7	
	d=b+c	1,000	1,175	17.5	313	△73.4	387	23.9	△27.1	
300계열 비중(d/a)				2.3		△2.0		△76.9		
	400계열(e)	1,000	323	△67.7	280	△13.3	45,871	16307.7	258.0	
400계열 비중(e/a)				△2.3		2.0		76.9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37)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은 화학적성분에 따라 모델이 구분되는데 크롬-니켈을 주성분으로 하는 오스테나이트계(304, 316계열 등) 및 크롬을 주성분으로 하는 페라이트계(410, 430계열 등) 등이 있으며, 요청인의 주요 생산품은 오스테나이트계이며 일본산 특수강은 주로 400계열임

□ 보세구역 지정 및 지속운영여부

- (요청인) 국내 주요수입·수요자들은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시 수입자들은 행정 부담이 있는 보세공장운동을 중단하고 일반수입으로 전환하여 수입이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산업피해가 지속될 것이라 주장함
- (피요청인) 국내 수요자들의 보세구역 신청은 수입 통관 등의 행정적 부담을 덜고, 완제품 수출시 원재료 관세 환급 등을 위해 보세사업자 지정을 신청한 것이며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된다 해서 즉각 보세구역지정을 해제하고 국내 시장으로 완제품을 수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
- (조사실) 일본산 재심사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을 중간재로 국내 보세공장 에서 제조가공을 하고 있는 수요기업에 대해 보세공장 설립시기와 보세특허요건과 혜택, 반덤핑관세 종료 후 보세공장 지속운영 계획 등에 관해 조사함

① (보세공장 설립) 국내 주요 보세공장 4개중 2개사는 원심 조치 이전에 보세공장 설립신고를 했으며 2개사는 반덤핑 조치 이후 보세공장 운영 특허를 받아 보세공장을 설립 운영 중임\*\*.

\* 원심 : '11. 4. 21, 1차 재심 : '16. 1. 6, 2차 재심 : '20. 7. 14

\*\* 주요 수입자의 보세공장 설립시기 :

xxx('91), xxx('10.5월), xxx('13.12월), xxx('16.6.2)

- (보세특허요건) 보세공장 운영은 고시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특허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특허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하여, 점수를 산출한 후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특허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보세공장 운영 시 세관에 사용신고, 반출입신고등의 세관절차를 따라야 함  
\* 수출비중, 시설요건, 통제시설, 물품관리능력 등 평가

- (보세특허혜택) 일반공장 운영 시 관세환급액보다 보세공장 운영시 과세보류액이 크며 이자 등 금융비용\*을 절감 할 수 있고, 보세공장 외부공정 사전허가 생략, 긴급반출 허용 등 통관절차 간소화 및 중계물품 장기보관이 가능하여 수출경쟁력 제고가 가능함

② (보세공장 지속여부) 보세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수요기업에 반덤핑관세 부과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세공장을 운영할 계획인지 문의한 바,

- **(지속운영)** 중간재로 일본산 재심사대상물품을 사용하고 있는 수요기업\*(xxx)은, 보세공장운영의 통관절차가 간소하고 다른 중간재를 사용하고 있어 다시 보세구역특허신청을 취득하기 어려워 반덤핑 관세부과가 종료되어도 지속적으로 보세공장을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
- **(운영종료)** 중간재로 국내 동종물품을 사용하고 있는 수요기업(xxx, xxx)은 보세사 채용에 따른 재정부담 및 세관의 관리 감독에 대한 행정 부담으로 반덤핑 관세 부과 종료된다면 보세공장 운영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 답변
- **(결론)** 보세공장 운영 시, 관세 등의 납부 유예 혜택이외 세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반덤핑 관세 부과 종료 후 보세공장 운영은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 판단됨

보세공장 운영 특허요건

1. 제조·가공 또는 그 밖의 보세작업에 필요한 기계시설 및 기구의 비치
2. 물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측정용 기기와 이에 부수하는 장비의 비치
3. 원재료, 제품, 잉여물품, 수입통관 후 반입물품의 구분, 보관 가능한 창고, 야적장, 작업장의 확보
4. 보세화물 관리를 위한 1명 이상의 보세사 채용, 단일보세공장의 경우 각 공장별 1명 이상 채용
5. 원자재의 반출입, 제품 제조·가공, 제품 반출 및 잉여물품의 처리 관련 물품관리체계 확립, 물품관리 위한 ERP 시스템 구축
6. 원자재 등의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보세작업의 감시·감독
7. 특허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갱신 신청 전의 특허기간 동안 해당 보세공장의 법규수행능력평가 평균등급이 B등급 이상이어야 함

□ 신규 생산자인 SM스틸의 국내시장 진입의 영향

- (피요청인) 국내산업의 피해는 SM스틸과 요청인의 경쟁에 의한 피해라고 공청회(‘23.9.21)에서 재차 주장
  - 신규 국내기업이 대규모 설비를 투자하여 시장점유율을 잠식한 것이고 국내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시장이 전망 있는 산업이어서 SM스틸이 시장내 진입하였고, 요청인과 경쟁하고 있다고 주장
- (요청인) 디케이씨는 SM스틸과 경쟁하고 있지 아니하며, 22년 공시한 개별손익을 보면 약 100억이 넘는 영업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볼 때 국내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산업이 전망이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냄
  - SM스틸은 현재 디케이씨 및 일본 공급자의 재심사대상 물품과 동일한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나, 향후 국내산 동종물품 보다 일본산 특수강 물품과 경쟁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
- (조사실) 조사실은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 개시 공고<sup>38)</sup>를 하였으나 SM스틸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조사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SM스틸을 국내생산자에 포함시키지 못하였음. 이후 일본측 피요청인이 공청회(‘23.9.21)에서 SM스틸에 대한 조사를 재차 요청하여, SM스틸과 면담(‘23.11.1)을 통해 SM스틸의 국내시장 진입등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였고 추후 제출된 자료<sup>\*</sup>를 검토하였으나, SM스틸은 생산시설과 전체 생산 품목 등에 대한 기본정보만을 제공한 바, 이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sup>39)</sup>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을 조사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sup>\*\*</sup>가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 \* SM스틸 후판사업부 매출이익 내부자료, 국내 수요자 수주계약서
  - \*\* 생산능력, 매출액, 판매 및 재고, 가동률, 판매가격, 단위당 제조원가, 전체 영업이익, 고용, 임금, 설비투자 등이 필요

38)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61호(23.3.10)

39)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이해관계인의 자료협조요청) ④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 하는 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가격 비교 및 전망

- **(피요청인)** 한국향 수출물품의 가격은 국내 동종물품에 비하여 고급형 특수강임으로 고가로 판매되어 국내 동종물품과는 경쟁하지 아니하므로 덤핑방지 조치 종료시에도 피해를 지속 또는 재발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
- **(요청인)**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은 강종 계열 간 차이가 크고, 요청인은 주로 범용강 304계열 및 316계열을 생산·판매하고 있어 다른 강종의 가격 비교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
- **(조사실)** 조사실은 요청인에 일본산 재심사대상물품의 가격이 국내동종물품보다 xx%~xx%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산이 국내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에 대한 반박 자료를 요청했으나, 요청인이 거의 판매하고 있지 아니하는 다른 강종의 가격 비교는 불필요하다는 입장
  - 이에 조사실은 관세법 시행령 제 64조 제5항의 규정<sup>40)</sup>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료로서 한국 관세청 통관자료를 분석하였고, 재심사대상물품의 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보다 '19년은 xx%, '21년 xx%, 22년에는 xx% 고가임
  - 최근 공급국의 특수강 공급확대 동향<sup>41)</sup>과 현재 국내 조선업 등의 일본산 특수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황<sup>42)</sup>을 고려할 때, 특수강 판매가 거의 없는 국내산 동종물품과 경쟁이 될 것이라 예상하기 어렵고,
  - 또한, 일본산 재심사대상 물품의 가격이 국내산 동종물품 보다 높은 상황이 될 것이라 전망됨

40)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⑤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조사 및 덤핑방기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1) kotra 일본의 철강생산에 대한 주요 공급자별 동향 보고서('23.11)

42) 국내 조선사 질의답변서(23.5.10) 및 SM 스틸 면담('23.11.1)에서 확인



< 전체 강종 평균 판매 가격 >

(단위: 천원/톤, %)

구분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재심사대상물품(a)		<u>1,000</u>	<u>886</u>	△11.4	<u>1,275</u>	43.9	<u>2,050</u>	60.7	27.0
동종물품(b)		<u>1000</u>	<u>1,007</u>	0.7	<u>1,105</u>	9.8	<u>1,490</u>	34.8	14.2
가격차이(c=a-b)				음수전환		양수전환		양수확대	

\*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국내생산자 답변서 및 실사결과

### 3.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검토 종합

- 조사실은 재심사대상물품에 대한 덤핑방지조치가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 재심사대상물품 공급국의 생산능력 및 수출여력, 제3국의 수입 규제조치 현황,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가격비교 및 전망 등을 바탕으로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을 검토하였음
  - (덤핑방지조치의 효과) 덤핑방지조치 이전('09년)과 비교시 재심사 대상물품의 수입량은 감소되었고 동종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도 증가하여, 덤핑방지 조치의 효과가 있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종료할지라도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된다고 볼 수 없음
  - (생산능력 및 가동률) 재심사대상국가의 생산능력은 재심사대상기간동안 연평균 xx%감소했으며, 가동률도 '19년 xx%에서 22년 xx%로 감소함에 따라 일본산 재심사대상물품의 對한국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은 낮아 보임
  - (제3국 수입규제조치) EU를 제외한 미국, 인도, 중국은 일본산 스테인 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수입규제가 적용 제외되어, 이들 국가로의 수출 여건이 개선된다면, 한국향 수출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가격비교 및 전망) 현재 국내 수요자의 일본산 고가의 특수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황을 고려할 때, 특수강 판매가 거의 없는 국내산 동종 물품과 경쟁이 될 것이라 예상하기 어렵고, 또한 일본산 재심사대상 물품의 가격이 국내산 동종물품 보다 높은 상황이 될 것이라 전망됨
- 덤핑방지조치가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 재심사대상물품 공급국의 생산능력 및 수출여력, 제3국의 수입규제조치 현황,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가격비교 및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공급국의 생산능력 및 한국향 수출규모가 감소하였고, 공급국에 대한 제3국 수입규제가 축소되었으며, 일본산 재심사대상물품의 가격이 국내산 동종물품의 가격보다 고가인 점을 고려하여 조사실은 덤핑방지 관세부과 종료할지라도 국내산업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함

#### IV.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 □ 최종 덤핑률

##### 가. NSSC(NIPPON STEEL Stainless Steel Corporation)

- 피요청인의 덤핑률 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로써, 원심 조사결과 덤핑률인 43.72%을 피요청인의 덤핑률로 산정함

##### 나. JFE(JFE Steel Corporation)

- 조사실은 피요청인의 덤핑률 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용가능한 자료로써, 원심 조사결과 덤핑률인 43.72%을 피요청인의 덤핑률로 산정함

##### 다. Yakin(Nippon Yakin Kogyo Co., Ltd)

- 조사실은 피요청인의 덤핑률 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용가능한 자료로써, 원심 조사결과 덤핑률인 22.53%을 피요청인의 덤핑률로 산정함

##### 라. 그 밖의 공급자

- 그 밖의 공급자의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부속서2 제7조에 따라, 22.53%를 적용하였음

##### 마. 최종덤핑률 수준을 종합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 재심사대상공급자별 최종 덤핑률 (단위: %) >

공급국	피요청인(공급자)	원심	1차 재심	2차 재심	3차 재심
일본	NSSC(NIPPON STEEL Stainless Steel Corporation)	43.72	43.72	43.72	43.72
	JFE(JFE Steel Corporation)	43.72	43.72	43.72	43.72
	Yakin(Nippon Yakin Kogyo Co., Ltd)	22.53	22.53	22.53	22.53
	그 밖의 공급자	22.53	22.53	22.53	22.53

## V. 무역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항

비 공개

## 참고

##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재심 산업피해조사 경과

- '23.01.11. : (주)디케이씨 덤핑방지관세 종료재심사 요청 접수
- '23.03.03. : 기획재정부에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 관련 의견 송부
- '23.03.10. : 덤핑방지관세 재심사 개시 결정(기획재정부 공고 제2023-61호)
- '23.03.28. : 국내생산자·수입·수요자에 질의서 송부(답변기한 : '23.05.10.)
- '23.05.10. : 국내생산자 답변서 제출
- '23.05.10. : 수요자 답변서 제출
- '23.06.29. : 국내산업피해 이해관계인 회의 개최
- '23.07.07. : 이해관계인 회의 이후 추가의견서 제출
- '23.08.10. : 공급자 대리인 의견서 추가의견서 제출
- '23.08.14. : 공청회 개최 공고(무역위원회 공고 제2023-12호)
- '23.08.30. : 생산자 현장 방문
- '23.09.05. : 조사기간 연장결정 ('23.9. 9→ '24. 1. 9)
- '23.09.21. : 공청회 개최
- '23.10.26. : 생산자 현지실사
- '23.11.21. : 중간보고서 수정본 공개
- '23.11.22. : 최종덤핑률(안) 관련 이해관계인회의 개최
- '23.12.21. : 최종판정